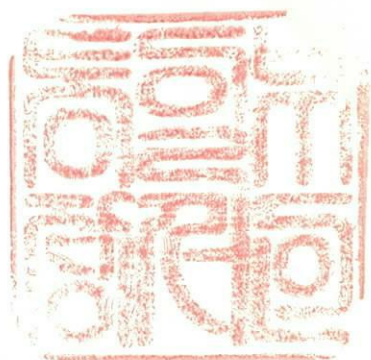


남북통행의
관문
남북통일의
전초기지

남북출입사무소 10주년 자료집



차례

● 제1장 개관	6
1. 출범 배경	8
2. 역할과 기능	9
3. 조직 및 예산	13
● 제2장 남북 출입시설	16
제1절 개요	18
제2절 경의선 출입시설	18
1. 건립 배경	18
2. 시설 현황	19
제3절 동해선 출입시설	25
1. 건립 배경	25
2. 시설 현황	26
● 제3장 남북 출입통행	28
제1절 남북관리구역	30
1. 추진 경과	30
2. 주요 내용	32
제2절 남북 출입통행 현황 및 절차	35
1. 인원 및 차량의 출입절차	35
2. 남북 출입 현황	40
3. 출입절차 개선	42
제3절 경의선 철도·도로 통행	45
1. 인원 출입	45
2. 차량 출입	49
3. 남북 열차운행	50

남북통행의 관문 남북통일의 전초기지

제4절 동해선 철도·도로 통행	53
1. 인원 출입	53
2. 차량 출입	56
3. 남북 열차운행	56

● 제4장 출입심사 관계기관 58

제1절 개요	60
---------------	----

제2절 관계기관 현황 및 역할	61
1. 법무부	61
2. 관세청	62
3. 보건복지부	64
4. 농림축산식품부	66
5. 해양수산부	67
6. 문화재청	68
7. 국방부	69
8. 한국철도공사	71
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73
10. 현대아산	74

제3절 정책협의 및 기관 간 유대 강화	75
1. 「운영협의회」 운영	75
2. 기관 간 유대 강화	77

● 부록 78

역대 남북출입사무소장	80
남북출입 관련 주요 연표	82
주요 법규집	90
1. 고시·훈령	90
2. 남북합의서	108
3. 북한법규	134
4. 운영규정	139

발 간 사



2013년은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2003년 11월 20일 탄생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24일 최전방 지역인 경기도 파주에서 남북출입사무소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남북출입의 역사는 남북관계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을 걷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였습니다. 이는 남북 분단 이후 끊어져 있던 남북의 혈맥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반세기 넘게 지속된 분단과 단절의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통해 직접 남북을 오가는 평화의 희망을 만든 의미가 있습니다.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서 남북한이 함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개성 관광, 각종 남북회담 개최 및 인도적 물자 수송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동해선 육로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 외에도 남북간 회담,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남북간에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소중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북간에 왕래한 인원은 53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북통행의
관문
남북통일의
전초기지

오늘의 남북출입사무소가 있기까지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뒤돌아 보면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선구자적 발자취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남북출입사무소가 평화의 회랑, 통일의 관문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선도하는 최일선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출입사무소가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자에는 남북출입시설, 남북 출입통행 현황, 출입심사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남북출입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에 남북출입사무소가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3. 12

남북출입사무소장 서호



제 1 장

개 관

2003 - 2013

1. 출범 배경 8

2. 역할과 기능 9

3. 조직 및 예산 13

2003 ~
2013



제1장 개관

2003 - 2013

8
9

1. 출범 배경

6·25 전쟁 이후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을 연결하는 모든 도로와 철도를 통한 인적 통행과 물자 교류가 중단되었다. 모든 남북간 도로와 철도는 폐쇄되었고, 유일하게 유엔사가 관할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한 도로 통행만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남과 북은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이어 개최된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2002년 9월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우리 측에서 북한측에 제공키로 함으로써 반세기 동안 끊어져 있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었다.

남북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장비의 운반이 빈번해지고,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과 2003년 9월부터 금강산 육로관광이 본격화됨으로써 남북사이에 인원과 물자의 출입업무를 관할하는 상시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2월부터 남북 출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임시로 남북 출입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1월 20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남북 출입사무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후 2003년 12월 24일에 임시 출입경 건물에서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출입사무소 현판식을 갖고 남북출입 업무를 본격화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의 개소는 오랜 분단과 단절의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이 제3국이나 유엔사 관할 구역인 판문점을 경유하지 않고,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통해 직접 남북을 오가는 통로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남북출입사무소 헌판식(2003.12.24)



• 금강산 육로관광 개시(2003.2.23)

2. 역할과 기능

남북출입사무소는 지리적으로 최전방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측이 쉽지 않은 북한으로의 통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남북출입사무소의 역할과 기능도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남북통행의 역사와 함께 부침이 있어왔다.

2003년 출범 이후 약 3년만인 2006년에 현재의 모습을 갖춘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을 경의선과 동해선 지역에 각각 준공하였다. 아울러 2007년 12월에는 경의선 도라산 물류센터를 완공하고, 2010년 9월에는 동해선 물류센터를 완공함으로써 출입 및 물류를 위한 물적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2005년부터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우선 남측 구간에 대해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출입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2013년 9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남북은 연내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하여 일일단위 상시 통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2월 현재 북한측 구간에 대해 관련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향후 북한측 구간에도 전자출입체계(RFID)가 구축되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남북 출입통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간에 철도·도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그 결과 2003년 2월에 동해선, 3월에 경의선 임시도로가 개통되었다. 2003년 2월 5일에 금강산 육로관광 사전답사단 일행 86명이 최초로 임시 동해선 도로를 따라 방북한데 이어, 같은해 2월 21일에는 개성공단 건설부지 사전답사단 일행 37명이 경의선 임시도로를 따라 방북하면서 남북통행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2003년 9월부터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금강산 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 남북화물열차 시험운행(2007.5.17)



• 개성공단 철수 차량행렬(2013.4.27)

10 11

으며, 2006년 4월에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포장도로가 준공되었다.

철도 통행과정을 보면, 2002년 9월 시작된 철도연결 공사를 통해 2003년 6월에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가 남북간에 연결되었다. 현재의 도라산역이 2006년 5월에 완공되었고, 4월에는 강원도 고성에 제진역이 완공되었다. 그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07년 5월 17일에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각각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7년 12월 11일부터 남북화물열차가 경의선 우리측 도라산역과 북한측 판문역 간에 주 5회 정기적으로 운행하였다.

하지만 2008년 12월 1일 북한측의 일방적 육로통행 제한 조치에 따라 그 이후 화물열차운행이 중단되었다.

개성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통행 과정도 부침을 겪었다. 2007년 10월 2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일행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였고, 그 해 12월 5일에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관광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2008년 12월 1일 북한측이 일방적 육로통행 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개성관광은 1년만에 중단되었다. 한편 2003년 9월부터 본격화된 금강산 육로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된 이후 중단되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남북간에는 개성공단으로의 통행만이 남게 되었다. 2013년 들어 북한은 4월 3일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을 차단하고, 4월 8일에는 개성공단 내 북한측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철수시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잔류하고 있던 우리측 인원들이 모두 철수된 5월 3일부터 개성공단 출입경도 잠정 중단되었다.

이후 남과 북은 개성공단 출입경 정상화를 위해 7월 6일부터 7차례 개성공단남북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였고, 9월 6일에는 군 통신선을 개통하고, 9월 16일부터 출입경을 다시 재개하였다. 출입경이 재개된 이후 10월 30일에는 우리 국회 외통위 국회의원 21명이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 경의선 출경 100만 명 달성 기념식(2012.6.27)



•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 체험 모습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이래 지난 10년간의 출입경 누계 인원은 약 538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경의선은 225만명, 동해선은 313만명에 이르고 있다. 2012년 6월 27일에는 경의선출입사무소를 통해 출경한 인원이 100만명을 기록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남과 북을 오가는 인원 에 대한 심사·검역 등의 통행관리, 반출입 물자의 통관 지원, 열차운행과 관련한 대북 연락 및 협의, 출입과 관련한 민원사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출입사무소에는 통일부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출입통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관으로부터 군, 경찰 등 출입 통행과 관련된 협조 기관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서부지역 출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에 「경의선 출입사무소」, 동부지역 출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편,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간 출입업무 기능을 넘어, 남북교류 현장 체험과 통일 의식을 함양하는 장소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민통선 주변 안보관광지인 임진각, 판문점, 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전망대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과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도라산역의 경우 연간 8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출입사무소 방문객들에게 브리핑 및 시설견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단 및 통일문제에 대한 방문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2011년 5월부터 통일교육원에서 지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안보 현장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정전 6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2013. 7.26)



•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접촉(2007.7.20)

12 13

■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 체험 연도별 참여인원

구분	참여인원	초등	중등	고등	기타
2011년	4,373명	2,449(56%)	841(19%)	816(19%)	267(6%)
2012년	2,155명	836(39%)	672(31%)	364(17%)	283(13%)
2013년 11월말	4,871명	2,826(58%)	803(17%)	800(16%)	442(9%)

한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도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2012년 9월 21일 경기도·파주시·DMZ Docs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4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이, 2013년 7월 26일에는 한국전쟁기념재단·국가보훈처·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정전 60주년 기념 UN참전국 교향악단 평화음악회」가 도라산역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남북출입사무소에는 남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개소 이래 두 차례의 남북간 회담이 경의선 출입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첫 번째 회담은 2007년 7월 20일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으로 남북은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의 군사적 보장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협의하였다. 두 번째 회담은 2011년 3월 29일 민간차원의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다.



● 개소 10주년 기념식(2013.11.20)

3. 조직 및 예산

남북출입사무소의 통일부 조직을 보면, 2003년 11월 출범 당시 남북출입사무소장(부이사관) 아래 2개과(경의선운영과, 동해선운영과) 24명이었으며, 이후 남북 출입업무의 증가에 따라 2006년 1월 26일 출입총괄과가 신설되어 3과 35명이 되었다. 2007년 2월 28일 실무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이 추가로 증원되어 3과 40명이 되었으나, 2009년 5월 25일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능 및 정원 재조정으로 실무인력 5명(5급 5명)이 감축되었다. 이후 2012년 9월 17일 실무인력 1명(6급)이 추가로 감축되어 2013년 12월 현재 남북출입사무소 통일부 조직은 소장(고위공무원 나급) 아래 3과 34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에는 통일부 외에도 법무부·관세청·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방부·식품의약품안전처·문화재청·유엔사 등 출입심사 및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현재 경의선 출입사무소에는 13개 기관 60명, 동해선 출입사무소에는 3개 기관(법무부·관세청·국방부) 21명이 근무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의 예산을 살펴보면, 2003년 11월 출범 당시에는 통일부 교류협력 국 예산 1억 1백만원을 전용하여 충당하였고, 2004년에 최초로 10억 77백만원이 편성되었다. 이후 2006년 1월 26일 출입총괄과 신설에 따라 예산이 약 16억 63백만원 증액되었다. 특히 2007년 12월에 도라산 물류센터 준공 및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 2010년 9월 동해선 물류센터 준공 등에 따라 예산은 연평균 약 5.1% 증가되었으며, 2013년 예산은 38억 7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예산 현황 및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다.

■ 연도별 예산 현황

구분(연도)	통일부 총 예산액	남북출입사무소 예산액	통일부 대비(%)	증가율(%)
2004	94,871,718	1,077,007	1.14	-
2005	94,321,676	1,085,282	1.15	0.77
2006	105,192,594	2,748,092	2.61	153.21
2007	109,847,887	3,210,846	2.92	16.84
2008	125,316,071	3,587,601	2.86	11.73
2009	121,528,741	3,237,341	2.66	△9.76
2010	154,212,245	3,387,900	2.20	4.65
2011	205,620,826	3,363,090	1.64	△0.73
2012	212,900,850	3,436,140	1.61	2.17
2013	222,182,561	3,807,100	1.71	10.80

*통일부 예산액은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금액임. (단위 : 천원)



제 2 장

남북 출입시설

2003 - 2013

제1절 개요	18
제2절 경의선 출입시설	18
1. 건립 배경	18
2. 시설 현황	19
제3절 동해선 출입시설	25
1. 건립 배경	25
2. 시설 현황	26

2003 ~
2013

제2장 남북 출입시설

2003 - 2013

제1절 개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이후, 북한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출입시설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남북 간 인원·차량·물자(화물) 왕래 시 수반되는 통행심사·통관검사·검역검사 등 출입경업무 전반에 대해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하였다.

경의선 출입사무소의 철도·도로출입시설(도라산역 포함) 및 동해선 출입사무소의 철도·도로출입시설(제진역 포함)은 2006년 준공하였으며, 경의선의 도라산 물류센터는 2007년 12월, 동해선 물류센터는 2010년 9월 준공하였다. 현재 남북출입사무소의 경의선 출입사무소와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포함한 총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67만 5,988㎡이며, 건물은 51동 8만 6,424㎡이다.

제2절 경의선 출입시설

1. 건립 배경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간 육상교통로를 통해 인원·차량·물자(화물)의 남북왕래가 예상됨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출입 절차수속을 위한 출입시설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출입시설 건설이 추진되었다. 출입시설은 향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로 인직·



• 류길재 통일부 장관 경의선 출입사무소 방문(2013.3.22)

물적자원의 통행심사·통관검사·검역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설을 여객과 화물동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출입시설의 기능을 제고하되, 주변의 생물권 보호 및 자연환경 보전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다.

도로출입시설의 전면과 후면은 GATE의 이미지로서 남과 북의 관문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후면의 캐노피는 물결의 흐름을 의미하며 면면히 이어온 우리 민족의 정신을 상징하는 의미를 부여하였고, 측면은 그동안 단절되어온 남과 북을 연결하는 다리(BRIDGE)의 이미지를 상징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전반적으로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남북이 하나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민족의 염원을 표현하였다.

도라산역이 있는 철도출입시설의 전면 지붕은 우리나라 고유문양인 태극문양을 반영하여 남과 북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접근함을 표현하였고, 또한 태극문양에서 추구하는 상생효과를 반영하여 남북분단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2. 시설 현황

가. 시설 규모

경의선 출입시설은 도로출입시설, 철도출입시설 및 도라산 물류센터로 구성되어있다. 도로출입시설의 경우, 남북왕래하는 인원은 3만명, 차량은 2만 5천대가 가능토록 설계되었다. 시설 규모는 인원심사를 위한 본관동, 차량검사를 위한 차량심사게이트 등 75,178㎡부지에 총 13동 18,310㎡이다. 차량심사게이트는 원활하고 신속한 차량흐름을 위해 출경차량심사게이트와 입경차량심사게이트를 분리하였다. 특히, 출경



■ 경의선 출입시설 전경 ■

차량심사게이트와 입경차량심사게이트는 승용차와 대형버스를 각각 심사가 가능토록 분리하였다.

철도출입시설은 남북간에 일일 3만명의 왕래가 가능토록 38,656㎡의 부지에 1동 15,825㎡ 규모로 건립되었다. 남북간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남측 분계역 기능과 서울방향으로 운행하는 기차역으로써 도라산역 개찰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라산물류센터는 공항·항만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시설규모는 연간 화물차량 이용 80만톤, 화물열차 이용 80만톤으로 총 160만톤의 남북 이동화물을 처리가 가능토록 328,181㎡의 넓은 부지에 25동 19,488㎡를 건설하였다. 남북으로 이동하는 화물의 보관·재포장 등이 가능한 보관시설과 재포장시설, 동물(애완동물 포함) 및 육류, 식물류 등의 통관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 계류장시설 등을 건설하여 북측으로부터 동식물 및 육류 반입시 국내에 병충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의선 출입시설 현황

구 분	도로출입시설	철도출입시설	도라산물류센터
시설면적	13동 18,310㎡	1동 15,825㎡	25동 19,488㎡
부지면적	75,178㎡	38,656㎡	328,181㎡
주요시설	출입관리시설, 출입심사기관 사무실, 관계기관 사무실, 구 출경동 및 제3화물창고 등 13동	도라산역사, 출입관리시설 및 관련부처 사무실 1동	컨테이너야드, 세관창고, 동물검역 계류장, 식물검역창고, 주차장, 철도차량검수시설 등 25동



• 경의선 도로출입사무소 외관

나. 출입심사기관 사무실

도로출입시설에는 통일부를 비롯하여 법무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출입경심사기관, 국방부 등 남북출입 관련 유관기관 등 13개 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통일부는 관세청과 협의하여 경의선 출입시설 중 도로출입시설은 2006년 1월 27일 도라산통관장으로 지정하였으며, 도라산역은 2006년 5월 24일 도라산 통관역으로 지정하여 남북왕래 출입시설로써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출입시설을 인원심사구역, 세관검사구역 및 방역검사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남북왕래 방북자에 대해 인원심사구역에서는 법무부, 세관검사구역에서는 관세청, 방역심사구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출입경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반입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방역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관검사시설



인원심사시설



방역검사시설



농수산축산물 방역검사시설

■ 경의선 도로출입사무소 출입경 심사시설 ■

■ 경의선 출입시설 통관장 및 통관역 지정현황

구 분	내 용	면적(거리)	
통관장	도로출입시설 · 도라산물류센터 전지역	88,012㎡	
통관장	관세통로	남북출입사무소 입구 → 제2통문 → 군사분계선	2.34km
	세관검사장	휴대품검사장 1,013㎡(출경장 405㎡, 입경장 608㎡)	1,013㎡
		화물검사장(체크포인트 측면주차장 535㎡, 세관창고 280㎡)	815㎡
		컨테이너검사장(컨테이너검색센터 628㎡, 주차장 6,692㎡)	7,320㎡
통관역	철도출입시설 전지역	54,701㎡	
통관역	관세통로	도라산역 → 남방한계선 → 군사분계선	2.5km
	세관검사장	철도출입시설의 지상층 1,067㎡, 지하1층 899㎡	1,966㎡

철도출입시설은 열차이용 승객의 출입경 심사구역과 도라산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라산역은 역무업무를 수행하는 구역으로 맞이방, 매표실, 열차운행 지령실 등 6개실로 구성되며 면적은 709.76㎡이다. 도라산역은 남한 통관역으로서 북측으로 가는 열차의 시발역이다. 도라산역 구내 선로는 여객선 4개선로, 화물선 3개선로, 유치선 2개선로, 컨테이너선 4개선로, 검수선 4개선로 등 총 17개선로가 설치되어 남북간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시설을 완비하였으며, 도라산역과 서울역간 운행시설도 구비하였다.



• 경의선 철도출입사무소 외관

도라산 물류센터는 시설운동을 위한 종합관리동, CY(컨테이너 야드)관리동, 전력동 등 관리·운영시설 7개동, 화물 보관·재포장을 위한 식물검역 정온창고, 제1화물취급장, 제2화물취급장 등 건물 4개동과 2개소의 컨테이너야드의 화물취급시설, 남북간 이동하는 동식물 검역을 위한 축산물계류장 관리동, 출입통제실, 축산물소독실 등 동물검역·계류시설 11개동, 남북왕래하는 여객·열차의 분계역으로써 남북열차의 정비·보수 업무수행을 위한 철도차량검수시설 1개동으로 총 건물 23개동과 2개소의 컨테이너야드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8월 5일부터 도라산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물류유통 전문업체인 CJ대한통운(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향후 남북간 축산물 왕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동물검역·계류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철도차량검수시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경의선 도라산 물류센터 시설별 운영주체

구분	시설규모(㎡)	운영주체	
건물 23개 동	73,623.03		
종합관리동(1)	1,987.25	통일부	
관리 및 운영시설 (6)	CY관리동	1,176.79	"
	게이트	637.59	위탁관리 운영업체
	주유대 및 정비고	481.49	"
	공구창고-1	165.36	"
	공구창고-2	165.36	"
	전력동	213.22	통일부
창고시설 (3)	식물검역 정온창고	1,018.45	농림축산식품부
	제1화물취급장	3,930.49	위탁관리 운영업체
	제2화물취급장	3,259.37	"
동물검역 및 계류장 (11)	제3화물취급장	1,600.00	관세청
	계류장 관리동	639.22	농림축산식품부
	정문소독시설	54.00	"
	출입통제실	42.00	"
	축산물 소독창고	532.00	"
	애완동물사	165.33	"
	돈사	518.00	"
	우사	608.00	"
	마사	595.20	"
	환축격리사	234.00	"
	장비고	189.00	"
부검 및 소각장	252.00	"	
철도차량검수시설(1)	2,363.41	국토교통부	
컨테이너 야적장(CY) 2개소 (10야드 26,231.70㎡, 20야드 26,563.80㎡)	52,795.50	위탁관리 운영업체	

다. 시설 관리운영

남북출입사무소는 효율적인 출입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현재 용역관리인원은 경의선 출입사무소에 50명, 동해선 출입사무소에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되어 국가중요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며, 매일 안전점검 및 취약시기 특별 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남북출입사무소 내에 구내식당, 편의점, 은행 등이 입주하여 출입고객 및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 동해선 출입사무소 방문(2013.7.18)

제3절 동해선 출입시설

1. 건립 배경

정부는 금강산관광 초기에 관광이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도로출입 시설을 우선 건설하고, 장기적으로는 강원북부지역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대비하여 동해선 물류센터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단계로 도로·철도 출입시설을 건설하고, 2단계에 동해선 물류센터를 건설하여 북한 동북부지역에서 개발·생산한 텅스텐, 마그네슘 등 광물자원의 반입·저장·이동에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도로출입시설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남북이 화합하고 융합하는 이미지를 표현하여 완만한 지붕곡선으로 형상화하였다. 출입심사장 측면 전체에 창을 설치하여 넓은 조망과 자연채광으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출입시설은 제진역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철도역사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구현을 위해 철재와 유리를 사용한 하이테크한 구조미를 표현하여 독창적인 조형미로 철도역사의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특히 건물의 정면은 남북화합의 염원을 철도 교량으로 형상화하여 남북분단 이후 끊어진 남북철도의 연결을 상징하였다.

철도여객공간과 역무공간의 출입구를 분리하여 동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콘코스(철도출입시설에서 보안검사와 남북왕래를 위한 출경심사·세관검사·방역검사를 마친 방북자가 대기하는 공간)를 중심으로 역무시설 및 지원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동선 및 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 동해선 출입시설 전경 ■

2.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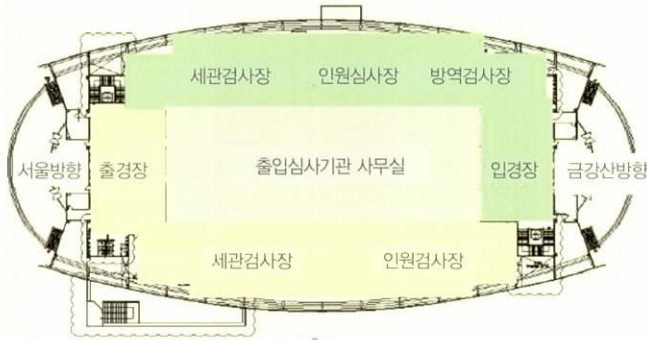
가. 시설 규모

동해선 출입시설은 경의선 출입시설과 동일하게 도로출입시설, 철도출입시설 및 동해선 물류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출입시설은 일일 남북왕래 인원 2만 1천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시설규모는 인원심사를 위한 본관동, 차량검사를 위한 차량심사게이트 등 60,704㎡ 부지에 3동 14,055㎡이다. 차량심사게이트는 원활하고 신속한 차량흐름을 위해 출경차량 심사게이트와 입경차량 심사게이트를 분리하였다.

철도출입시설은 금강산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측 분계역 기능과 서울 방향으로 운행하는 기차역으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북한 동해안에서 개발한 광물자원이 반입될 것도 예상하여 남북왕래인원은 일일 1만명, 왕래 화물은 50만톤이 가능토록 46,679㎡의 부지에 1동 6,705㎡로 건설하였다.

동해선 물류센터는 공항·항만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연간 총 100만톤, 화물차량 이용 50만톤, 화물열차 이용 50만톤의 남북이동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규모는 126,590㎡의 부지에 8동 12,041㎡이다. 남북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화물차량 입경 심사게이트와 출경 심사게이트를 별도로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 고성에 소재한 동해선 출입시설은 도로출입시설, 철도출입시설, 및 동해선 물류센터를 포함해 부지 233,973㎡에 건물규모 총 12동 32,801㎡이다.



■ 동해선 도로출입사무소 출입경 심사구역 ■

■ 동해선 출입시설 현황

구 분	도로출입시설	철도출입시설	동해선 물류센터
시설면적	3동 14,055㎡	1동 6,705㎡	8동 12,041㎡
부지면적	60,704㎡	46,679㎡	126,590㎡
주요시설	출입관리시설, 출입심사기관 사무실, 관계기관 사무실 및 부속시설 등 3동	제진역사, 출입관리시설 및 관련부처 사무실 1동	컨테이너야드, 종합관리동, 식물검역 창고, 출입경화물게이트, 공용야드 관리동 등 8동

나. 출입심사기관 사무실

도로출입시설에는 통일부를 비롯하여 법무부·관세청·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출입경심사기관, 국방부 등 남북출입 관련 유관기관 등 9개 기관이 입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도로출입시설은 인원심사구역, 세관검사구역 및 방역검사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남북왕래 방북자에 대해 인원심사구역에서는 법무부, 세관검사구역에서는 관세청, 방역검사구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출입경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금강산관광객이 반입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방역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 3 장

남북 출입통행

2003 - 2013

제1절 남북관리구역	30
1. 추진 경과	30
2. 주요 내용	32
제2절 남북 출입통행 현황 및 절차	35
1. 인원 및 차량의 출입절차	35
2. 남북 출입 현황	40
3. 출입절차 개선	42
제3절 경의선 철도·도로 통행	45
1. 인원 출입	45
2. 차량 출입	49
3. 남북 열차운행	50
제4절 동해선 철도·도로 통행	53
1. 인원 출입	53
2. 차량 출입	56
3. 남북 열차운행	56

2003 ~
2013



제3장 남북 출입통행

2003 - 2013

제1절 남북관리구역

1. 추진 경과

남과 북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 사이에 5차례의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2001년 2월 8일 최종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과 북은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발효시키기로 하였지만, 북한측이 2001년 2월 11일 “행정상의 이유로 동 합의서의 서명·교환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합의서 발효가 연기되었다.

합의서 발효가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2002년 4월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새로이 동해선 철도·도로도 연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2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2년 9월 18일 이전에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해결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편,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유엔군과 북한군은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두 차례 개최(2000.11.17, 2002.9.12)하여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이어 남과 북은 2002년 9월 14일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차량게이트

남과 북은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9. 16, 통일각)과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9.17, 평화의 집)을 통하여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함으로써 「군사보장 합의서」(총 6개조, 41개항)를 발효시켰다.

■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요지

- 남북관리구역 설정
 - 기존 경의선 철도노반 기준, 250m 폭 설정
- 지뢰 및 폭발물 제거
 - 계절조건 고려, 작업 1주전 상호 연락, 지뢰제거 작업 동시 착수
 - MDL부근 쌍방 400m 근접시 남측 화,목,토/ 북측 월,수,금 작업
- 철도와 도로 작업
 - 쌍방 200m 근접시 남측 월,화,수/ 북측 목,금,토 작업
 - 공사마감 단계시 MDL 20m 월선 허용
- 공사현장 책임자간 접촉 및 통신연결
 - 공사현장 군사책임자간 군사실무 문제는 전화통지문을 통한 협의 원칙
 - 공사현장 군사책임자간에 유선통신 2회선, 팩스 1회선 설치
- 작업장 경계 및 안전보장 대책
 - 안전보장을 위해 100명 이내의 경계병력 운용
 - 경계병력의 무장 : 개인화기, 개인당 실탄 30발로 제한
- 합의서 발효폐기 및 수정보충
 - 남한 국방부장관과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서명, 교환한 날부터 발효

이후 남과 북은 쌍방간 합의된 「군사보장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판문점 '통일각'과 '평화의 집'을 오가며 2002년 10월 3일부터 2003년 1월 27일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남북군사실무접촉을 가졌다. 이를 통해 남북한은 관리구역내 지



뢰제거 절차 및 검증 문제, 통신선 연결, 임시도로 통행 등과 관련된 군사적 보장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2003.1.27)하였다.

우리측은 7차례의 남북군사 실무접촉중 제1~5차 접촉(1차 : 202.10.3, 2차 : 10.11, 3차 : 10.16, 4차 : 10.25, 5차 : 11.13)에서는 지뢰 제거 작업 및 검증 문제, 통신선 연결,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 및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동안 북한은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여 왔으나, '남북관리구역이 비무장지대의 일부임을 확인하고 승인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들은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기함으로써 북측의 정전협정 준수가 기정 사실화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요지

- 쌍방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
- 쌍방은 임시도로를 통하여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을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
 -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들은 2000년 11월 17일과 2002년 9월 12일에 체결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에 체결된 군사보장합의서 1조 2항에 준하여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
- 쌍방은 승인된 인원, 차량, 자재 및 장비에 한하여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
- 본 잠정합의서는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방의 통보에 따라 또는 동서해지구 기본도로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

2. 주요 내용

가. 남북관리구역의 의미

남북관리구역은 유엔군(한국군)과 북한군에서 각각 관할하는 지역으로 철도·도로를 통해 남북을 통행하는 인원 및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무장지대내에 설치한 안전 구역으로써, 남과 북의 인원이 상대방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남북 군이 각



•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각 관리하고 있는 구역에서 출입인원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구역이다.

남과 북의 인원이 상대방의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군을 통해 출입계획을 상대 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출입계획을 받은 측의 군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남북관리구역을 통해 출입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문 승인과는 별도로 남한과 북한에서 통행계획을 승인받아야 남북관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나. 남북관리구역 설정

남북관리구역은 비무장지대(DMZ)의 일부로서 정전협정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유엔군(UNC)과 북한군이 2000년 11월 17일 개방하기로 합의하고, 2002년 9월 17일 한국군과 북한군이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설정되었다.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1289호 - 1291호 구간에서 남은 철도노반 중심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70m, 서쪽으로 30m, 총 100m로 하였다.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39호 - 제0043호 구간에서 남은 철도노반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 50m, 서쪽으로 200m, 총 250m 폭으로 비무장지대 남과 북의 경계선까지로 하였다.

다. 남북관리구역 관할 및 관리 권한

국방부와 유엔사(UNC)는 2003년 1월 20일 남한 관리구역에 대한 약정을 맺어 한국군은 관리권, 유엔사는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철도·도로 공사 시행, 인원·차량에 대한 운행계획 수립, 관리구역 출입자에 대한 안전 책임을 지며, 유엔사는 DMZ 출입 및 통과 승인, 정전협정의 유지 책임을 지고 있다.



•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남북 경비 초소

라.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영

남과 북은 2002년 9월 17일 합의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와 2003년 12월 23일 합의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경비 초소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다.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영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근무인원은 쌍방이 각각 3명으로 한다.
- ② 근무는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0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08시부터 17시)의 필요한 시간에 실시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근무인원들의 무장은 각기 편리한 개인무기로 하고, 1인당 실탄 30발 이하를 휴대하며, 그 외 다른 무기, 전투장비(기술기재)의 반입을 금지한다.
- ④ 쌍방 초소 근무 인원들은 불필요한 군사적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100m 거리를 유지한다. 100m 내로 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측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2절 남북 출입통행 현황 및 절차

1. 인원 및 차량의 출입절차

가. 출입절차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2002년 12월 8일 합의),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2003년 1월 27일 합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년 1월 29일 합의),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7년 12월 13일)와 남한의 법률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북한 법규인 「개성공업지구법」,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 규정」, 「개성공업지구세관규정」과 「금강산관광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등 남북의 여러 법규를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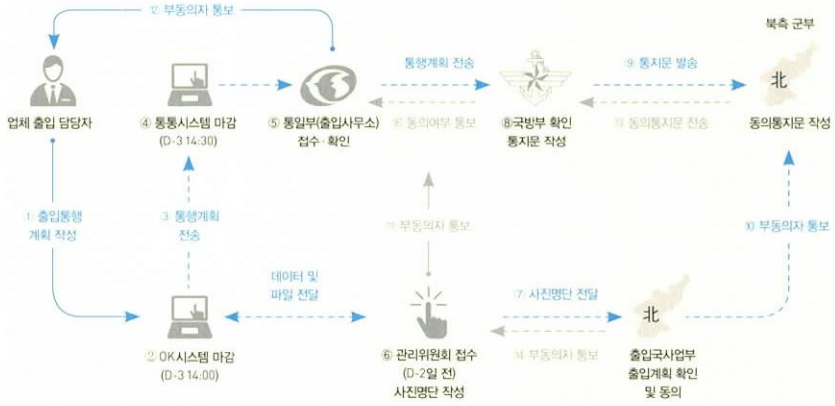
통상 남북간 출입을 위해서는 인원의 경우, 출입증명서 신청(남한)→출입승인(북한)→방문증명서 발급(남한)→출입계획 제출(남한·북한)→금강산 및 개성공업지구 방문의 절차를 거친다. 차량은 수송장비운행 승인 신청(남한)→수송장비운행 승인(남한)→출입계획 제출(남한·북한)→통행차량증명서 발급(남한)→출발보고서 작성(남한)→금강산 및 개성공업지구 도착 등의 절차를 거친다.

남북간 출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민원인이 출입통행 3일전까지 개성공단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OK시스템)에 출입통행계획서를 제출하면, OK시스템은 제출된 출입통행계획서를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교류협력시스템(통통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하게 되고, 통일부(남북출입사무소)는 이를 우리 군에 전달한다.

한편, 동해선의 경우 출입통행계획서를 동해선 출입사무소 출입통행 담당자의 통일부 메일 또는 「통통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우리 군은 출입 하루전에 이를 북한군에 전달하고, 북한군은 이에 대한 출입동의 여부를 당일 오전(08:00경)에 우리군에 통보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출입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개성공단 출입경 과정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도 북한 출입국사업부에 출입통행계획서를 전달하고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또한 제출된 출입통행계획서는 남북출입사무소내 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유관 기관에도 통보한다.

■ 남북 출입통행 업무 흐름도(경의선 출입사무소)



■ 방북승인 절차



나. 긴급 및 지연 출경

남북간 육로를 통한 출입은 사전에 제출한 출입통행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나, 이외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출한 출입통행계획을 변경하여 출입경하는 긴급 출입경과 지연 출경 제도가 있다.

긴급 출입경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남북간 출입경하는 제도로, 이 경우에도 변경된 출입통행계획이 필요하다. 긴급출경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교통정체 등 당초 출입계획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여 불가피하게 출경하여야하는 경우이며, 긴급입경은 환차발생, 경조사 등으로 당초 출입계획 시간보다 조기에 복귀하는 경우이다.

긴급 출경시에는 민원인 신청(사유서 첨부)→우리 군과 출경시간 협의→공문 시행(군, 법무부, 관세청, 관리위)→북한에 통지문 발송(군)→북한 동의 여부 통보(군→남북출입사무소)→개성공단 관리위에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친다.

긴급입경시에는 개성공단 관리위 요청(남북출입사무소)→우리 군과 입경시간 협의

→공문 시행(군, 법무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관리위,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경찰)→북한측에 통지문 발송(군)→북한 동의 여부 통보(군→남북출입사무소)→개성공단 관리위에 통보, 입경준비 등의 절차를 거친다.

지연 출경은 당초 계획대로 출경하지 못했지만 별도의 통지문 없이 오전에 한해 출경이 가능하고, 1일 2건 이내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긴급 출경과 차이가 있다. 지연 출경 절차는 민원인 신청(사유서 첨부)→관리위와 협의→공문 시행(군, 법무부, 관세청, 관리위)→관리위, 북한과 협의→북한 동의 여부 통보(관리위)→민원인 및 유관기관에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친다.

동해선의 경우 긴급 출입경 시 민원인 신청(사유서 첨부)→공문시행(군 운영단)→UNC 동의→북한에 통지문 발송(군)→북한 동의 여부 통보(군→남북출입사무소)→유관기관 통보(CIQ, 현대아산 등), 출입경 심사 준비 등의 절차를 거친다.

다. 출입경 시간

남북간 육로통행을 위한 출입경 시간은 경의선 출입사무소와 동해선 출입사무소의 주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경의선 출입사무소의 경우 개성공단 사업자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자 및 원자재 등의 출입경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동해선 출입사무소에 비해 출입경 수요가 많은 편으로 하절기(4월~9월)에는 출경 12회, 입경 11회 등 총 23회 출입경이 이루어지며, 동절기(10월~3월)에는 출경 11회, 입경 10회 등 총 21회 이루어진다.

■ 경의선 출입경 시간

구분	평 일		토요일		비고
	출경	입경	출경	입경	
1	08:30		08:30		
2	09:00		09:00		
3	09:30		09:30		
4	10:00	10:00	10:00	10:00	
5	10:40	10:40	10:40	10:40	
6	11:10		11:10		
7		11:50		11:50	
8	14:00	14:00	14:00	14:00	
9		14:30		14:30	
10	15:00	15:00			
11	15:30	15:30			
12	16:00	16:00			
13	16:30	16:30			
14	[17:00]	17:00			출경(하절기)
15		[17:40]			입경(하절기)
계	11회(12회)	10회(11회)	7회	5회	

■ 동해선 출입경 시간

구분	출경	입경	비고
1	08:10		당일 · 1박 2일관광(일반)
2	09:10		1박 2일관광(학생)
3	09:40		사업자
4	11:20		2박 3일관광(골프)
5	15:30		2박 3일관광(일반)
6		14:05	2박 3일관광(일반)
7		15:30	사업자
8		17:00	당일 · 1박 2일관광
계	5회	3회	

동해선 출입사무소의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을 위해 출입하는 인원이 대부분으로 출
입경 횟수가 경의선 출입사무소 보다는 적은 편이다.

또한 동해선 출입사무소는 주요 이용인원이 금강산관광객으로 일요일 및 휴일 구분
없이 출입경이 이루어지나, 경의선 출입사무소의 경우에는 남북 공통 휴일이거나 북한
휴일인 경우에는 통행이 없다.

■ 남북한 명절 및 휴일

명절 및 휴일명			명절 및 휴일기간	
북	한	남	북	한
양	력	신	1.1	1.1
음	력	설	2.10~12(3일간) (2.10 일요일)	2.9~11(3일간) (2.10 일요일)
김정일	생일		2.16~17(2일간) (2.17 일요일)	
정월	대보름	정월	2.24(일요일)	
		3 . 1 절		3.1
국제	부녀절		3.8	
청	명	청	4.5	
김일성	생일		4.15~16(2일간)	
군	창건날		4.25	
노동	자 날	근로자의날	5.1	
		어 린 이 날		5.5(일요일)
		석가탄신일		5.17
소년단	창립일	현	6.6	6.6
정전협정	일	정전협정일	7.27	
해	방 일	광	8.15	8.15
정권	창건일		9.9	
한가위(추석)		추	9.19	9.18~20(3일간)
		개		10.3
		한		10.9
당	창건일		10.10	
어	머 니 날		11.16	
		성		12.25
헌	법 절		12.27	

(2013년도 기준)

2. 남북 출입 현황

2003년 2월 금강산 육로관광 사전답사 인원 86명이 동해선 육로를 통해 최초로 남북이 이루어 지고, 동년 11월 20일 남북출입사무소가 개소한 이후 동해선 및 경의선을 통한 남북한 출입경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동해선 및 경의선을 통한 남북한 출입경 인원은 2003년 9월부터 금강산 육로관광이 본격 시작되고,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 시범단지 공장건축이 착공됨에 따라 매년 출입경 인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북한군 초병에 의한 우리측 금강산관광객의 총격 사망으로 금강산관광이 중지되어 동해선을 통한 출입경 인원은 대폭 감소하였다.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에도 시설관리를 위한 출입이 이루어져 왔으나, 북한이 2010년 4월 27일 금강산지구의 우리 정부 및 민간 재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2011년 8월 23일 금강산지구 우리측 관리인원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동해선으로의 출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후에는 신계사 복원 등 기념행사 관련 출입이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경의선을 통한 출입경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고 진행되어 왔으나, 2013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출입경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한이 2013년 4월 3일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을 차단하고, 4월 8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키킴에 따라 우리 정부가 4월 26일 개성공단 남측잔류인원에 대한 귀환을 결정하고, 개성공단에 잔류해 있던 우리측 인원 전원이 5월 3일 철수함으로써 남북한 출입경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남북간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9월 6일 남북 군통신선이 연결되고, 9월 16일부터 개성공단 출입경이 다시 정상화되었다.

출경기준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을 통한 남북 출경인원을 살펴보면 2003년 43,038명, 2004년 321,088명, 2007년에는 529,882명 등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2008년 487,230명, 2009년 118,708명, 2012년 121,091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이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에 따른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2013년 4월 개성공단 사업 잠정중단 등에 기인한 것이다.

■ 인원 출입경 현황

구분 (연도)	경의선			동해선			총계
	출경	입경	합계	출경	입경	합계	
2003	3,643	3,642	7,285	39,395	55,833	95,228	102,513
2004	24,164	24,205	48,369	296,924	296,960	593,884	642,253
2005	66,772	66,328	133,100	335,713	334,946	670,659	803,759
2006	84,100	83,981	168,081	266,541	264,742	531,283	699,364
2007	144,971	144,739	289,710	384,911	386,107	771,018	1,060,728
2008	263,258	263,314	526,572	223,972	224,774	448,746	975,318
2009	115,026	115,157	230,183	3,682	3,694	7,376	237,559
2010	126,107	126,112	252,219	3,051	3,117	6,168	258,387
2011	115,249	115,244	230,493	436	451	887	231,380
2012	121,038	120,985	242,023	53	53	106	242,129
2013.11	66,320	66,337	132,657	434	434	868	133,525
누계	1,130,648	1,130,044	2,260,692	1,555,112	1,571,111	3,126,223	5,386,915

(단위 : 명)

차량의 경의선·동해선 출경 현황도 2003년 4,392대, 2004년 30,899대, 2007년 91,892대, 2008년 103,765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2009년 74,252대, 2012년 88,594대, 2013년 11월까지 47,447대 등으로 감소하였다.

■ 차량 출입경 현황

구분 (연도)	경의선			동해선			총계
	출경	입경	합계	출경	입경	합계	
2003	1,249	1,248	2,497	3,143	3,143	6,286	8,783
2004	15,314	15,128	30,442	15,585	15,487	31,072	61,514
2005	38,868	38,527	77,395	19,852	19,713	39,565	116,960
2006	47,352	47,154	94,506	14,724	14,682	29,406	123,912
2007	71,857	71,593	143,450	20,035	20,018	40,053	183,503
2008	91,309	91,776	183,085	12,456	12,621	25,077	208,162
2009	72,929	72,873	145,802	1,323	1,211	2,534	148,336
2010	83,308	82,873	166,181	1,027	1,113	2,140	168,321
2011	81,414	81,434	162,848	198	199	397	163,245
2012	88,586	88,625	177,211	8	8	16	177,227
2013.11	47,306	47,262	94,568	141	141	282	94,850
누계	639,492	638,493	1,277,985	88,492	88,336	176,828	1,454,813

(단위 : 대)

남북 동해선·경의선 육로 연결은 단순히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이란 개념을 벗어나, 두 지역에서 경제, 사회, 문화, 인도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금강산지역은 금강산관광과 함께 남한 학생들의 북한지역 체험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남북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자주 이루어짐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만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의선 도로는 2007년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하였고,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남한 방문시에도 이용하는 등 단순히 개성공단으로 출입경하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서울-평양 이동의 거점 역할도 수행하였다.

또한 2005년 10월 개성공단내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가 개소됨에 따라 남북 경제 교류를 희망하는 인원들의 출입경이 이루어졌고, 남북경제분야 실무회담도 이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2013년 9월에는 개성공단 잠정중단 이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당국간 합의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설치되었다.

육로를 통한 남북한 출입경은 기존의 제3국을 경유하여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경의선 및 동해선을 통해 직접 방문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일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한차원 발전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3. 출입절차 개선

가. 개성공단 출입처리 체계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출입신청 시스템(OK시스템)과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교류협력시스템(통통시스템) 등 2개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성공단 출입을 희망하는 인원은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출입국사업부에 먼저 출입체류 등록이 필요하며, 이후 동일한 내용을 통일부에 방문신청과 출입통행계획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4월 양 시스템을 연계하여 출입통행계획 제출을 일원화하고, 출입증 및 방문증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 개성공단 출입 통합처리 절차



나. 출입심사 간소화

남북왕래자의 개성공단 출입심사시 건강상태질문서, 휴대물품세관신고서, 차량 출·도착보고서 등을 징구함으로써 서류작성으로 인한 불편 및 대기시간 소요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8년 1월 수시방복 자중 '세관 성실 신고자'는 휴대품세관신고서 작성을 생략하였으며, 북한방문자중 '당일 방문자에 한해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생략하였다. 6월에는 차량 출입경 게이트를 추가로 운영하였고, 11월에는 차량 출·도착 보고서 제출도 생략하였다.

또한, 남북간 출입경시 성실신고자·수시방문자가 아닌 인원에 대해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징구하던 것을 적외선카메라, X-RAY 투시기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세관신고서 징구를 생략하였다.

그 결과 남북왕래자에게 서류작성에 따른 불편과 출입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고, 신속 원활한 출입통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 방문증명서 개선 및 전자출입체계(RFID) 시스템 구축

개성공단 출입경 편의를 위해 방문증명서를 개선하는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되었다. 2004년 방문증명서에 바코드를 넣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출입경 인원의 인적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출입경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출입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전자출입체계(RFID)를 이용한 인원·차량 자동 출입심사체계 구축 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였다. RFID 시스템 구축 사업은 출입 유관기관인 법무부, 관세청, 국방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2005년에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06년도에 시스템 구축 본사업과 함께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출입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전자카드 및 전산실을 마련하였다. 이후 기능 개선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2008년 8월부터 개성공단 상시출입 인원 및 차량에 대한 전자방문증, 전자운행증을 발급·배포하여 출입현장에서 자동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물류관리시스템 및 북한구간에서의 자동심사체계 설치·운영 문제는 북한과의 협의 등 제반여건 미비로 2013년 11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라. 출입경 횟수 확대

초기 개성공단 출입은 오전 입경 2회(09:30, 10:00), 오후 출경 2회(14:00, 16:30) 총 4회로 제한되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2006년 5월부터 입경 11회, 출경 10회 등 모두 21회, 2007년 4월부터는 하절기에 입경 12회, 출경 11회 등 총 23회로 확대되어 입주기업 및 건설공사 관계자의 출입이 크게 개선되었다.

마. 기타 출입개선 조치

① 초청장 신청·발급제도 일원화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초청장 신청을 관리위원회, 토지공사, 현대아산 등 개별 기관 별로 해왔으나, 2005년 4월부터 초청장 관련 업무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② 북한 군부의 인원검사 생략

군사분계선 출입계획에 따라 북한 군인이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통문앞에서 출입인원에 대한 인적사항, 적재물자에 대한 세부검사를 실시하여 출입에 많은 불편을 끼쳤으나, 2005년 10월부터 북한측에서 세부검사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부분 단축되었다.

③ 북측 통행검사소 본격 가동

당초 북측 통행검사소 본 건물은 2005년 4월 건축을 시작하여 2005년 11월 준공되었으나, 상당기간 가동을 하지 못하였다. 2006년 5월부터 통행검사소 본 건물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출입인원의 휴대물품에 대한 X-ray 검색대, 문형탐지기 운영 등이 가능해져 통관 검사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다.

④ 초청장 제도 폐지 및 출입증·체류등록증 시행

당초 개성공단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발행한 초청장에 의해 출입이 이루어져 초청장 발급에 1개월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40여일까지 소요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2006년 8월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및 건설공사 관계자 등에 대하여 초청장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대신 관리위원회의 출입증 발급업무가 시행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출입국사업

부의 포괄출입문건 제도로 전환하여 문건 발급이 10일 이내로 단축되었다. 이후 2008년 3월부터 북한에서 체류증을 발급하고, 2008년 4월부터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출입증을 발급함으로써 문건 발급이 훨씬 단축되었다.

⑤ 방문증 미소지자에 대한 '통일대교' 통행 편의 조치

우리 군과의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출입인원 명단을 사전에 군에 전달하여 방문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주시 '통일대교'를 통한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즉, 방문증을 소지하지 않은 인원이 통일대교를 통과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도라산 출입사무소에서 방문증을 수령하여 개성공단을 방문할 있도록 출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제3절 경의선 철도·도로 통행

1. 인원 출입

가. 총괄

2003년 2월 21일 개성공단 사전답사단 37명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최초로 남북을 왕래한 이후 3월 21일 임시도로가 개통되고, 6월 30일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착공. 2004년 6월 14일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선정, 2005년 9월 21일 본단지 1차 입주기업 선정, 2007년 6월 25일 본단지 2차 입주기업 선정 등으로 입주기업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개성공단 출입경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도별 출경 인원을 살펴보면 사업초기인 2003년도 3,643명, 시범단지 입주기업이 선정된 2004년도 24,164명, 본단지 1차 입주기업이 선정된 2005년도 66,772명, 2차 입주기업이 선정된 2007년도 144,971명, 개성공단이 안정화되고 입주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2008년에는 263,258명이 출경하였다.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된 2013년도 66,320명이 출경(2013년 11월 기준)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9년 이후 매년 11만 명에서 12만명 정도가 출경하였다.

또한 일일 평균 출경 인원도 2003년도 13명, 2004년도 80명, 2005년도 220명, 2007년도에 474명, 2008년 73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9년도 이후 평균 300~400명 정도 출경하였다.



• 개성관광 방북교육 및 유의사항 안내



• 개성 선죽교

■ 경의선 인원 출입경 현황

구분(연도)	출경	일일 평균 출경	입경	일일 평균 입경
2003	3,643	13	3,642	13
2004	24,164	80	24,205	80
2005	66,772	220	66,328	218
2006	84,100	287	83,981	287
2007	144,971	474	144,739	473
2008	263,258	731	263,314	731
2009	115,026	387	115,157	388
2010	126,107	422	126,112	422
2011	115,249	388	115,244	388
2012	121,038	405	120,985	405
2013.11	66,320	345	66,337	346
계	1,130,648	331	1,130,044	331

(단위 : 명)

나. 개성관광

개성관광은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출발하여 군사분계선을 지나 북측에 도착한 후 고려 왕조 오백년 도읍인 개성의 문화유적을 둘러보는 것으로, 현대 아산이 북측과 함께 진행하였다. 2005년 8월과 9월 세차례에 걸쳐 1,484명이 시범 관광을 실시한 이후 2007년 12월 7,427명이 개성관광을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개성관광이 시작되었다.

2008년 4월 18일부터는 오후관광이 실시되어 총 27회에 걸쳐 1,555명이, 본관광은 총 309회에 걸쳐 108,994명이 다녀왔다. 개성관광이 중단된 2008년 11월 28일까지

총 336회에 걸쳐 개성관광이 진행되었다. 누적 관광객은 110,549명이며, 시범관광을 포함할 경우, 112,033명이 개성관광을 하였다. 일평균 관광객은 329명이고, 2008년 10월 15일 개성관광객이 10만명을 돌파하였다.

■ 월별 관광 현황

구 분	순 수 관 광 객			합 계
	내국인	시민권자	외국인	
07년 12월	7,364	28	35	7,427
08년 1월	8,966	25	58	9,049
2월	8,413	35	92	8,540
3월	11,183	37	180	11,400
4월	11,227	52	257	11,536
5월	11,568	92	293	11,953
6월	11,839	55	274	12,168
7월	11,257	45	305	11,607
8월	7,124	25	298	7,447
9월	5,206	371	193	5,770
10월	6,942	131	275	7,348
11월	6,005	20	279	6,304
총 계	107,096	916	2,539	110,549

(단위 : 명)

개성관광객 110,549명 중 내국인은 107,096명이며, 외국인 및 시민권자는 3,455명이었다. 외국인 방문자 중 일본인 25%, 미국인 24%, 캐나다인 9%, 독일인 5%, 중국인이 5% 포함되어 있다.

다. 남북회담 및 주요 인사 출입경

2003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이후, 개성 또는 문산 등에서 남북실무접촉을 중심으로 다양한 남북간 회담이 개최되었다.

2003년도에는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및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9차례 회담이 이루어졌다. 2004년도에는 청산결제 실무협의,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 용천 재해구호 실무회담, 개성공단건설 실무회담, 군사통신 실무접촉 등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도에는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실무접촉, 농업협력위원회, 이산가족



● 노무현 대통령 경의선 육로를 통해 평양 방문(2007.10.2)

화상상봉 적십자 실무접촉, 8·15 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사업 남북실무접촉 등이 이루어졌다. 2013년도에는 개성공단 잠정 중단(4.8) 이후 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 실무회담, 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이 개최되었다.

또한, 2007년도에는 남북정상회담 사전 준비접촉이 이루어지고, 같은 해 10월 2일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였다.

2007년 11월 29일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육로를 통해 서울을 방문하는 등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는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 등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 및 주요 인사들의 육로 방문을 위한 중요한 관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8월 29일에는 뉴질랜드인 5명이 처음으로 오토바이 5대로 북한지역을 여행한 후 남한지역도 여행하기 위해 경의선 육로를 통해 입경하였다. 또한 10월 30일에는 정기 국회 국정감사 기간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1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현장을 시찰하였다.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사무처가 개성공단내 지역에 설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원들의 출입도 생겨났다.

2004년 10월 28일 남북간 교역 및 투자 관련 알선 상담 및 정보·자료 제공, 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연락 및 실무적 협의를 위해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가 개성에 개소됨에 따라 그동안 중국에서 이루어지던 남북경협 상담이 이곳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5년도부터 협력사업, 위탁가공, 일반교역 협의 등을 위해 출입경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 12월에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인원이 철수함으로써 잠정 중단되었다가 2009년 9월 우리측 인원이 복귀하였으나, 2010년 5월 북측의 요구에 따라 우리측 인원이 다시 철수함으로써 남북경협 협의 등을 위한 출입경은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사무처(이하 '남북공동위사무처')가 2013년 9월에 개성공단내에 설치되었다. 남북공동위사무처는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당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개성공단 방문 후 기자회견(2013.10.30)

국가간 연락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현재 관련 인원들의 출입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인도적 지원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경유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이루어져 왔다. 대한적십자사는 2003년 10월 8일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대상으로 한우 및 배합사료, 수의약품 등 축산분야에서의 인도적 지원을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실시하였다.

이후 민간단체들의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분야별로는 일반구호(식량, 의류, 연탄 등), 농자재 지원, 의약품, 보건의료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2. 차량 출입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한 차량의 출입경은 출입 인원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출경 차량 현황은 2003년도 1,249대, 2004년도 15,314대, 2005년도 38,868대, 2007년도 71,857대, 2008년도 91,309대 출경하였다. 이후 2009년도부터 2013년 4월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되기까지 매년 7만~9만대 가량의 차량이 출경하였다.

또한 일일 평균 출경 차량도 2003년도 4대, 2004년도 51대, 2005년도 128대, 2007년도 235대, 2008년도 254대 출경하였고, 2009년도 이후 매년 2~3백대의 차량이 출경하였다.

■ 경의선 차량 출입경 현황

구분(연도)	출경	일일 평균 출경	입경	일일 평균 입경
2003	1,249	4	1,248	4
2004	15,314	51	15,128	50
2005	38,868	128	38,527	127
2006	47,352	162	47,154	161
2007	71,857	235	71,593	234
2008	91,309	254	91,776	255
2009	72,929	246	72,873	245
2010	83,308	279	82,873	277
2011	81,414	274	81,434	274
2012	88,586	296	88,625	296
2013.11	47,306	246	47,262	246
계	639,492	198	638,493	198

(단위 : 대)

3. 남북 열차운행

가. 남북 열차운행 경과

남북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7.31)에서 남북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2005년 12월 31일 남북철도 연결구간 궤도 부설공사가 완료되어 남북 열차운행에 필요한 기본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남북은 2007년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에 따른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2007년 5월 17일 남북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였다. 경의선은 문산역에서 개성역까지 우리측 열차가, 동해선은 금강산역에서 제진역으로 북한측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운행됨으로써 분단 이후 60여년 만에 남북의 기차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남북 열차시험운행은 당초 2006년 5월 25일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되었다. 이후 2007년 2월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진전됨에 따라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007.2.27~3.2)과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2007.4.18~4.22)에서 남북열차 시험운행 실시를 합의하고,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2007.5.8~5.11)에서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에 합의하였다.

남북은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2차 회의(2007.5.13)에서 열차시험운행

의 명칭 및 날짜, 참가인원 및 참가급수, 시험운행 시간과 구간, 시험운행 방식, 시험운행 행사, 시험운행 일정 등이 포함된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역사적인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였다.

이후 남북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10.2~10.4)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2007.11.14~11.16)을 통해 문산-봉동간 남북화물열차 운행에 합의하고, 뒤이어 개최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2007.11.21)에서 「남북열차운행기본합의서」(2005.8.1 발효)가 규정하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기로 하였으며, 남과 북의 분계역에 열차운행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개최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는 「남북열차운행기본합의서」(2005.8.1 발효)에 따라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 실무적 문제들을 당국간에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공동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 쌍방 협의로 개최하는 수시회의, 그리고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구체적 협의를 위한 분계역장회의를 두고 있다.

제1차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는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경의선 도라산역과 판문역 사이의 화물열차 운행계획, 화물열차 취급절차, 열차운행사무소 업무절차, 화물장표류, 화물 운임 및 환율 문제 등에 대하여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그 합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채택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경의선 분계역 사이에 화물열차를 하루 1회 왕복으로 기관차 1대, 화차 10대, 차장차 1대 등 총 12량을 기본으로 운행하기로 하고, 매일 오전 9시 도라산역을 출발한 화물열차가 9시 30분에 판문역에 도착하여 화물 상하차 작업을 마치고, 14시에 판문역에서 남측으로 출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의선 분계역 사이의 화물열차 취급절차 및 열차운행사무소 직원들의 공동작업 절차를 부록으로 자세히 규정하였다. 또한 화물운임은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르며, 적용화폐는 유로화 또는 미 달러화로 합의하였다.

다. 남북화물열차 운행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우리측 도라산역과 북한측 판문역 간에 남북화물열차가 정기적으로 운행되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회로 평일 오전 9시에 우리측 도라산역을 출발하고, 오후 2시에 북한 판문역을 출발하여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운행되었다.

당초에는 총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의 차량을 편성하여 운행하다가



• 경의선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2007.12.11)

2008년 2월 1일부터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화물이 있을 경우에는 화물이 있는 화차만, 화물이 없을 경우에는 기관차와 차장차만 운행하였다. 남북화물열차는 2008년 12월 1일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따라 운행이 중단되었다.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총 222회(왕복 444회)를 운행하여 화물 운송량은 총 17회 31량 55TEU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컨테이너는 24량 235톤이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된 컨테이너는 7량 75톤이며, 주로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 물자를 수송하였다.

라.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열차운행사무소는 「남북열차운행기본합의서」(2005.8.1 발효) 제1조 제1항(‘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을 분계역이라고 하며 분계역에는 열차운행사무소를 둔다.’)에 근거하여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2007.11.21)과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2007.12.1)를 통하여 세부사항에 합의함으로써 2007년 12월 11일 업무를 개시하였다.

우리측 열차운행사무소는 도라산역에 사무소를 두고 통일부 직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배치하였으며, 통일부 직원 1명과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매일 화물열차를 이용하여 판문역에 위치한 남측열차운행사무소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북측 열차운행사무소는 판문역에 사무소를 두고 북한 철도성, 민경련, 민화협 소속 직원 3~4명이 합동으로 근무하였다.

우리측 도라산역 열차운행사무소와 북측 판문역 위치한 남측열차운행사무소 간에는 직통전화 1회선과 팩스 1회선을 운용하였으며, 판문역에 위치한 남측열차운행사무소와 북측열차운행사무소 간에도 전화 1회선과 팩스 1회선을 운용하였다. 이와 별도로 도라산역 역무실과 판문역 역무실 간에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화 1회선을 운용하였



• 금강산 만물상

으며, 열차와 분계역간 통신을 위해 무선통신기를 운용하였다.

남북열차운행사무소는 남북철도를 이용한 남북한 왕래, 물자의 반출입 및 수송장비 운행에 따른 열차운행을 지원하고 남북간 연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열차운행 및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 처리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이 우리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의 출입을 제한(2008.4.8)하고, 철도승무원의 개성공단 출입을 금지(2008.7.1)하는 조치에 이어 남북 열차운행 중단을 통보(2008.11.28)함으로써 2008년 12월 1일 이후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도 중단되었다.

제4절 동해선 철도·도로 통행

1. 인원 출입

2003년 2월 5일 금강산 육로관광 사전답사단 86명이 동해선 육로를 통해 최초로 남북을 왕래하였다. 2003년 9월 금강산 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7년까지 남북출입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동해선 남북출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2013년 11월 현재까지 155만명이 남북을 왕래하였고, 이 가운데 138만명이 금강산관광객으로 출입 인원의 약 90%을 차지한다.

가. 금강산관광

금강산관광은 1998년 4월 30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의해 기업인의 방북이 허용됨에 따라, 그 해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 사업에 합의하고, 11월 18일에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장전항을 향하여 첫 출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3년 2월 14일부터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을 실시하고, 같은 해 9월 1일부터 금강산 육로관광을 본격 실시하였으며, 2007년 한해 동안 34만 5천명이 금강산을 방문할 정도로 금강산관광이 활성화 되었다. 금강산 승용차관광이 2008년 3월 17일부터 시작되어 1,397명이 승용차로 금강산을 방문하였으며, 금강산골프장이 5월 28일 정식으로 개장되어 금강산 관광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금강산 육로관광객 현황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인원	36,028	267,971	298,247	234,446	345,006	199,966	1,381,164

(단위 : 명)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7월 12일 금강산관광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관광중단의 원인이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무고한 관광객이 사망한 것이었던 만큼, 우리정부는 관광재개 조건으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강화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보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는 외면한 채 관광재개를 요구하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측 재산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를 지속해 왔다.

북한은 2010년 4월 27일 우리측 부동산에 대한 몰수·동결조치를 취한 데 이어 2011년 4월 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취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4월 29일에는 기존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금강산 관광지구를 내움에 대하여」(2002년 10월 23일)를 대체하여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는 등 그동안 우리측 사업자와의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1년 7월 25일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당면문제 해결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했으나, 북한은 일방적인 재산정리만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금강산 관광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22일 북한은 우리측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는 사업자 간(현대아산-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 간 투자보장 합의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약속준수 원칙을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나. 남북회담 및 이산가족상봉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과 2009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였으며, 2002년 10월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실무접촉, 2006년 3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실무접촉 및 2006년 8월 대북 수해복구지원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2004년 5월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금강산에서 개최되었으며, 6월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속초에서 진행되었다. 제2차 회담을 참석하기 위해 북측 대표단 33명이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통해 출입하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8차례의 상봉행사와 7차례의 화상상봉을 통해 남북한 총 4,321가족, 2만 1,734명이 상봉하였다. 2002년 2월 4차부터 2010년 10월 마지막 상봉행사인 18차까지 모두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14,350명이 북측의 이산가족을 만나기 위해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출입하였다.

2013년 8월 23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2013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3년만에 개최되는 행사였지만, 북측은 9월 21일 일방적으로 행사 연기를 발표하였고, 2013년 11월 현재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동 행사를 위한 시설점검, 행사준비 등 사전 준비를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인원 357명, 차량 129대가 금강산을 출입하였다.

다. 대북 인도적 지원 등 기타 출입경

동해선 육로를 통해 대북 쌀 지원이 2004년 7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2만 5천톤, 2005년 7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2만 5천톤, 2007년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2만톤 등 3차례 이루어졌다.

또한 '새천년생명운동'의 북측 아궁이 개량 및 산림녹화사업,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의 대북 연탄지원,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의약품 전달 및 의료시설 개선사업, '통일농수산사업단'의 협동농장 지원사업 등 대북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를 위한 왕래가 있었으며, '온정인민병원 개원기념 행사', '지자체 남북교류협의회 워크숍' 등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의 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하기 위한 출입도 다양하게 있었다.



● 제진역에 도착하는 북남 열차(2007.5.17)

2. 차량 출입

동해선 출입사무소의 출입은 금강산관광객이 대부분으로 인원 대비 차량출입은 5.7%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로 출경 차량 현황은 2003년도 3,143대, 2004년도 15,585대, 2005년도 19,852대, 2006년도 14,724대, 2007년도 20,035대, 2008년도 12,456대 출경하였다. 2008년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됨에 따라 이후 차량 출입이 대폭 감소하였다.

■ 금강산 육로 차량 출입 현황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11	합계
차량	3,143	15,585	19,852	14,724	20,035	12,456	1,323	1,027	198	8	139	88,490

(단위 : 대)

3. 남북 열차운행

2007년 5월 17일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위해 북한측 열차가 금강산역을 출발하여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인 강원도 고성군 위치한 제진역에 도착하였다. 남측 인원 100명이 버스로 금강산역에 도착하여 북측행사에 참석하고, 북측 인원 50명과 함께 북측 열차를 타고 제진역에 도착하여 남측행사를 마친 후 오후 3시에 북측 인원은 열차로 복귀하였다. 동해선 철도 남북출입사무소를 이용하여 출입경 심사를 받은 것은 이 행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제 4 장

출입심사 관계기관

2003 - 2013

제1절 개요	60
제2절 관계기관 현황 및 역할	61
1. 법무부	61
2. 관세청	62
3. 보건복지부	64
4. 농림축산식품부	66
5. 해양수산부	67
6. 문화재청	68
7. 국방부	69
8. 한국철도공사	71
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73
10. 현대아산	74
제3절 정책협의 및 기관 간 유대 강화	75
1. 「운영협의회」 운영	75
2. 기관 간 유대 강화	77

2003 ~
2013



제4장 출입심사 관계기관

2003 - 2013

제절 개요

남북출입사무소는 법무부·관세청·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출입심사기관과 통일부·국방부·문화재청·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남북한 출입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우선, 남북한 출입경을 희망하는 인원은 통일부로부터 북한(남한)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의 경우에는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방문의 경우, 통일부로부터 관련 승인을 받은 이후, 인원의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OK시스템)을 통해 남북출입사무소에 출입경 신청을 하고, 차량의 경우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통통시스템)을 통해 출입경 신청을 한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출입경 신청을 한 인원 및 차량에 대해 국방부(군운영단)에 통보하고, 군 운영단은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출입경을 승인한다.

출입경 승인이 난 인원 및 차량에 대해서는 남북출입사무소가 법무부·관세청·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출입심사기관에 통보하며, 군운영단은 북한군에 통보하게 되고, 북한으로부터 출입경 동의를 통보받음으로써 최종으로 출입경 인원 및 차량이 확정된다.

출입경 수속시, 인원은 인원 게이트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출경시에는 관세청→법무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입경시에는 보건복지부→법무부→관세청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차량과 운전원은 별도의 차량게이트에서 출입경 심사를 받으며, 인원과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남북으로 출입경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독을 실시한다.



• 입경 심사장



• 차량운전자 심사장

제2절 관계기관 현황 및 역할

1. 법무부

가. 일반 현황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들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라산출장소 소속으로 총원은 7명이며, 일일 근무인원은 6명이다. 도라산출장소는 정식직제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각과 소속의 직원들이 매주 출장 명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평일과 토요일은 정상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요일이나 남북한 공통 휴일에는 휴무하고 있다.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는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의 정식 직제로 초기 9명이 근무하였으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에 따라 2013년 11월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다.

근거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한 왕래자에 대한 출입(국) 심사지침」(법무부훈령 제752호) 등이 있다.

나. 주요 업무 및 실적

주요 업무는 육로를 통해 남북한을 출입경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출입경 심사를 하는 것이다. 출입경 심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방문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여권), 출국 또는 입국금지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행정행위로 이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출입경 심사로 구분된다.

출입경 심사 절차는 국민의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의 위조·변조, 유효기간 도과, 훼손



손으로 인한 판독불능 등을 살펴 유효성 여부를 판단한다. 방문증명서 소지자와 명의인의 일치 여부에 대한 심사는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사진 조회 및 통일부로부터 사전 전송받은 방문증명서상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여 확인한다. 또한, 통일부의 승인여부 및 통행시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규제 여부를 확인하여 출입경 심사기록을 생성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으로 출입경을 심사하는데 여권소지자와 명의인의 동일인 여부, 여권 및 사증의 유효성 여부 심사, 각종 규제여부 확인, 체류기간 도과여부 검사, 통일부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여권에 출발도착 심사인을 날인한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입국신고서를 제출 받는다.

출입경 심사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방문 승인 현황 및 출입경 계획을 통보받아 이루어지며, 전자방문증명서로써 출입경 현황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으로 통보한다.

남북 출입경 인원 중 차량 운전자가 아닌 경우는 인원심사장을 통해 출입경 심사를 받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운전자 심사장에서 출입경 심사를 받는다.

2. 관세청

가. 일반 현황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근무하는 관세청 직원들은 서울본부세관 통관국 통관지원과 도라산사무소 소속으로 2002년 12월 23일 도라산 임시통관장(서울세관 관할)으로 운영하였다. 2006년 1월 27일 도라산 통관장으로 지정(서울세관장)되었으며, 2006년 5월 24일 도라산 통관역으로 지정(관세청장) 되었다. 도라산사무소는 정원이 15명이며, 정식 직제가 아니므로 별도 정원은 없다.

근무는 주 6일 체제(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에 따른 다음 주 1일 대체휴무 실시)이고, 개성공단 출입자 출경업무로 인해 07:30 이전에 조기 출근(08:30분 출경, 17:00 입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토요일은 7명이 근무(07:30~16:30)하고 있다.

인력은 인원출입경에 4명, 차량게이트에 2명, 화물반출입에 5명, 컨테이너 검사에 2명, ZBV 운영에 1명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출입경 인원 확인업무는 X-Ray검색기, 문형 탐지기, 심사테스크, 외화신고 각각 1명씩 위치하여 출입경 인원에 대해 심사한다. 출입경 차량확인업무에는 GATE 근무인원 2명이 GATE에서 차량통과 시 사전에 신고된 차량여부를 모니터로 확인한 후 전산처리한다.

출입경 화물 및 적하목록 심사업무는 반출입 화물 심사, 적하목록 심사 각 1명이



• X-Ray 검색대를 통한 세관검사

CP(check point)사무실 내에서 전산으로 사전 신고되는 화물 및 적하목록을 심사한다.

출입경 차량검사는 검색대상차량 번호를 육안으로 식별 후 선별 개장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컨테이너 검색 센터에는 검색장 운영직원이 의심차량을 선별하여 컨테이너 검색장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이외 차량은 게이트 앞 이동형 X-Ray장비(ZBV)쪽으로 유도 검색하여 운영한다.

ZBV 차량운행은 차량내에서 검색과 관독을 동시에 실시(1차량 2명 탑승)하고, 차량 출입경 시 2개의 게이트 앞에 정차 중인 차량을 이동형 X-Ray장비(ZBV)로 이동하면서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는 2003년 9월 육로통행 시 속초세관에서 출장 근무를 하다가 2007년 1월 29일 고성세관으로 개청하여 7명이 근무를 하였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에 따라 2013년 현재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나. 주요 업무 및 실적

주요 업무는 남북간 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 남북간 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 남북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교역 지원 업무로서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관을 지원한다.

둘째, CIQ 통관(남북왕래자 휴대품 검사) 업무로서 출입경 관리, 유치 및 예치, 성실 신고자 관리, 엑스레이 관독, 문형탐지기 운용, 도라산 통관역 검사 등을 실시한다.

셋째, Check Point 업무(화물반출관리업무)로서 수출입신고, 적하목록 심사와 정정, 수입검사, 차량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ZBV 검색기,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운용하고 있다.



• 열감지 카메라를 통한 체온측정 검사

넷째, 출입경 차량 출발 및 도착보고(통행차량 승인) 업무로서 강원도 고성과 더불어 유일한 육로 국경개념으로, 통일부의 운행승인을 확인하여 출발 및 도착을 허가한다.

다섯째, 조사(밀수단속) 업무로서 외환조사, 관세사범 검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사회안전저해물품(총기, 마약 등) 밀반입 방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세 업무 과정에서 2008년 10월 남측의 인원이 방북하면서 미화 3만불 상당의 외화를 불법 휴대, 반출한 사건이 있었다. 관세청은 사건발생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며, 직원교육 강화, 사전 여행자 정보분석제도 도입, X-Ray 등 과학장비에 의한 검색,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3. 보건복지부

가. 일반 현황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2003년 11월 28일부터 인천검역소 김포출장소 도라산사무소 소속이었으며, 2007년 8월 10일 이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김포지소 도라산사무소 소속이 되었다. 2007년 8월 14일부터 상시근무를 하고 있으며, 검역인력은 4명으로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무하고 있다.

동해선 출입사무소의 경우에는 2003년 9월 육로통행 시 국립동해검역소 속초지소에서 출장 근무를 하다가 2005년 1월 5일 국립동해검역소 고성지소로 정식 직제로 되면서 7명이 상시 근무를 하였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에 따라 2009년 4월 9일 전원 철수하여, 현재는 속초지소에서 출입경 발생 시 출장 근무를 하고 있다.

나. 주요 업무 및 실적

주요 업무는 검역대상 감염병 또는 신종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검역업무(유해검역포함),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 업무 및 접경지역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실시하며, 감염병 예방 및 홍보, 교육업무 등을 수행한다.

경의선 출입사무소 검역장소로는 본관동 입·출경장(출경 검역대 신설)과 도로차량 입경분소(3개)가 있으며, 육로를 통한 입경자 전원을 대상으로 열감지카메라를 이용하여 발열감시 또는 직접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의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증상자(발열, 설사)의 경우에는 유증상자 조사표 작성, 병원안내 또는 자가치료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2009년에는 9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출경자를 대상으로 검역사상 처음으로 출경검역을 실시한 바 있다.

■ 도라산사무소 신종플루엔자 현황 : 인천공항과 타기관 비교

구분	인천공항 의뢰 건수	타기관 의뢰 건수
2009년도	9건(양성 3건, 음성 6건)	1건(양성 1건)
2010년도	16건(양성 8건, 음성 8건)	3건(양성 3건)

접경지역 말라리아 감염 의심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항원 진단KIT 검사 및 혈액도말검사를 실시하며(파주시보건소 의뢰), DMZ 접경지역 군부대 및 개성공단 근로자,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홍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파주지역 및 개성공단 말라리아 환자발생 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파주	개성	도라산	파주	개성	도라산	파주	개성	도라산	파주	개성	도라산
환자수	157	12	4	235	4	1	102	2	0	74	2	0

(단위 : 명)

또한 개성관리위원회 부속의원, 현대아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유선 또는 방문으로 신고대상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상 기관에 대한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고 있으며, 환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시 검역소에 신고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필요시 예방 및 홍보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검역구역 내 집단급식소(도라산식당)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개인



• 차량 소독기

위생 및 식품위생 교육·홍보, 감염병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가검물을 채취하여 감염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또한 입경장 및 차량분소 등을 통한 출입경자를 대상으로 리플렛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PDP, 차량분소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

가. 일반 현황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근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도라산사무소 소속으로 2003년 2월 21일 개성공단 육로 답사반이 방북 하면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07년 12월 10일 동물검역계류장 및 식물검역창고(도라산 물류센터)가 설치되었다.

서울지역본부는 2013년 11월 현재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라산사무소는 축산물위생검역과와 식물검역과 직원 각 1명이 비상주 출장 근무 중이다.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의 경우에는 서울지역본부 속초사무소 직원이 출입경 발생 시 출장 근무를 하고 있다.

나. 주요 업무 및 실적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금지 품목을 현장에서 검역하고, 남북 도로통관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집중 소독하여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행자 신발소독 및 축산관계자 소독 조치와 동·식물 국경검역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출입경 동물·축산물·식물에 대한 검역·검사, 가축전염병 발생 시 국가위기 대응 및 역학조사, 축산물 위생감시 및 출입 쇠고기 이력관리, 동물 용의약품 등의 검정·검사 및 안전관리, 외래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및 수입위험분석, 동물·축산물 정밀검사 및 수의과학·식물검역 기술개발 등이다.

주요 검역대상으로는 동물 및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축산물가공품 등)과 식물류(박피밤, 짠은행, 고춧가루, 들깨박, 건버섯, 건더덕, 건고사리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경시에는 반출 농·축산물 검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소비를 위한 식자재 품목에 대한 검역이 주로 이루어진다.

■ 반출 농·축산물 검역 실적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농산물(건)	3,325	3,172	2,615	24	72
축산물(건)	540	177	10	-	-

입경시에는 농산물 중심으로 검역이 이루어지며, 축산물관계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도 이루어진다. 휴대품에 대한 검역은 2004년에 12,616건, 2007년에 6,556건, 2012년에 46건이었으며, 화물에 대한 검역은 2004년에 106건, 2007년에 436건, 2012년에 460건이었으며, 2012년 축산관계자에 대한 소독은 230명, 차량에 대한 소독은 8만 7천대를 실시하였다.

5. 해양수산부

가. 일반 현황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이하 서울지원) 도라산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지원에는 지원장을 포함하여 총 10명, 3팀제(운영관리 3명, 검역검사 3명, 품질관리 3명)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원은 관내에 김포공항 및 도라산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각 1명이다. 도라산사무소는 서울지원 직원들이 매일 출장명령을 받아 근무하며, 월~토요일은 정상 근무, 일요일 및 남북한 공통 휴일은 휴무다.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직원이 출입경 발생 시 출장 근무를 하고 있다.

나. 주요 업무 및 실적

주요 업무는 출입경 수산행물 검역, 출입경 검사 및 위생·품질 검사,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해당 어류 불법유통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중 검역 대상은 식용·관상용·시험연구조사용 살아있는 수산생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와 냉장·냉동 전복류 및 굴 등이다.

■ 여행자 휴대품 검역대상

구분	휴대품 대상
검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관상용·시험연구조사용 살아있는 수산생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 냉장·냉동 전복류 및 굴
비검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대상 이외의 수산생물로 추정되는 경우 • 이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 추정되는 경우
휴대품 반입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 교란등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승인 LMO 관상어(형광관상어) 등

6. 문화재청

가. 일반 현황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는 문화재감정관실이 3곳이 있다. 제1 문화재감정관실은 경의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 1층에 있고, 6일 근무체제로 비상근 2인이 근무한다. 제2 문화재감정관실은 경의선철도 남북출입경 CIQ지역 1층에 있고, 제3 문화재감정관실은 경의선철도 남북출입경 CIQ지역 지하1층에 있으나, 제2·제3 감정관실은 아직 사무실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이전 경기도청 소속 시 복수감정제로 1일 2인이 근무하였으나, 2007년 이후 문화재청으로 이관되면서 1일 1~2인 체제로 전환하였다.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는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소속 상근직원 1명과 비상근 직원 2명이 속초항 문화재감정관실에서 상주하며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양양공항, 동해항 문화재감정관실을 담당하고 있다.

나. 주요 업무 및 실적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미술품에 대해 미리 감정을 받아야 함에도 현재까지 파주 문화재감정관실에 '비문화재확인원'을 받으러 온 민원인은 없었으며, 출입경 CIQ지역에서 적발되어 감정관실로 의뢰가 온 예도 없었다.

■ 출경 예정 문화재 감정실적(2006년~2013년 11월 현재)

연도	총 감정 건수	비문화재 확인감정	검색대 적발	기타 감정
2006	1건	0건	0건	1건(경찰)
2007	1건	0건	0건	1건(경찰)
2008	24건	0건	0건	24건(화상)
2009	4건	0건	0건	4건(화상)
2010	1건	0건	0건	1건(화상)
2011	32건	7건	0건	25건(화상)
2012	6건	1건	0건	5건(화상)
2013	3건	0건	0건	3건(화상)
계	총 72건	8건	0건	64건

문화재감정관실에서 비문화재 여부를 확인 받지 않고 출경 시 적발되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밀반출 기도로 「문화재보호법」에만 위반되지만, 밀반입인 경우(북측은 밀반출) 북측에 적발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앞서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되어 북측의 신병 인도 요구가 따르며, 국내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방북하지 못한다.

실제로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내국인이 북한문화재를 우리나라에서 고가에 판매해 달라는 북측 사람의 부탁을 받고서 차량에 은닉하여 국내에 들어와 인사동에서 알아보다가 다시 밀반출한 예가 2건 있었다.

2006년 6월에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가 북한 문화재 와전 1점, 청자완 2점을 같은 업체 북측 근로자에게 구입하여 2회에 걸쳐 남측으로 반출하여 보관하던 중, 다시 북한에 반입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또한 2007년 7월에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가 북한문화재 도자기 6점을 밀반출한 혐의로 북한측의 진상조사 후 강제 추방되었는데,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4회에 걸쳐 차량에 은닉하여 남측으로 가져와 팔리지 않자 다시 개성으로 밀반출하였다.

7. 국방부

가. 일반 현황

2002년 9월 18일 도라산 지역에 경의선 철도·도로 통행업무 전담 출입시설을 배치함에 따라 2002년 9월 19일 국방부에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공사를 위한 종합상황실이 운영되고, 2004년 1월 1일 통행업무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군 운영단」



• 우리군의 비무장지대 경계근무 모습

이 편성되었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군 운영단장은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로서 남북통행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위임한 남북통행계획서 처리, 남북관리구역 통행간 안전통제 및 군사적 지원, 우발 상황 관련 군 검문 검색, 남북통행간 특이사항 상황 보고, 남북관리구역 통행관련 협의 및 실무조치, 남북군사 통신연락소 운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업무수행 체계는 평시에는 국방부 정책실 지시를 받아 남북통행 업무를 시행하며, 유사시에는 1사단 계획에 의거 군사대비 계획을 시행한다.

나. 주요 업무 및 실적

첫째, 남북 통행 계획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인원·차량·물자 출입경 계획을 접수하여 동 계획을 유엔사에 통보한다. 또한, 북한군에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을 발송하고, 북한군의 동의 통지문을 접수한다.

둘째, 남북 통행간 군사적 안전을 보장한다.

먼저, 우리측 인원·차량·물자가 출경하는 경우, 통행심사 인원 및 차량을 확인하고, 검문소 및 초소 통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군사분계선 통과시 북한군에 안전하게 인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대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경하는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에서 우리측 인원의 신변을 안전하게 인수하여 호송한다.

셋째, 남북관리구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군 운영단은 감사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돌발상황 등을 점검하고, 인원 및 차량의 통행시 안전보장을 위해 전방을 감시하며, 계획된 차량 통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관리구역내 철도·도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잡목 제초 작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넷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내 유엔군사령부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사분계선 통행계획 처리(MDL 통과 승인), 남북 관리구역 안전 순찰(1일 3~5회), 개성공단 반출입 물품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 운영단은 유엔사와 주1회 이상 만남을 가지면서,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엔사의 주요인사 방문시 업무현황 등을 소개하기도 한다.

다섯째, 남북 군 통신연락소의 운영 및 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 운영단은 남북한 군사 실무 접촉 창구로서 일일 군사분계선 통행계획 통지문 발송 및 접수, 긴급 통화 및 회담 관련 전문을 송·수신하고 있다. 또한, 대북 통신용 직통전화 및 FAX 장비 등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 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 현황

구분	통신전용	서해상 우발 충돌방지	예비(구 선로)
회선	2회선	2회선	2회선(동 케이블)

동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은 2003년 12월 5일 동케이블 2회선, 2009년 12월 28일 광케이블 3회선 등 5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나, 2010년 11월 28일 북측구간이 산불로 단절됨에 따라 현재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하고 있다.

8. 한국철도공사

가. 일반 현황

도라산역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소속으로 2003년 12월 2일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근무인원은 총 11명으로 매일 3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다.

나. 주요 업무 및 실적

2007년 5월 17일에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구간 열차 시험 운행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12월 11일에는 경의선 문산~판문간 남북 화물열차 개통 및 정기운행을 개시 하였으나, 2008년 11월 28일 중단된 상태이다. 당시 열차편성은 기관차, 화물(화물이 있는 경우), 차장차 순이었으며, 주요 수송 품목은 의류, 고무혼합물, 포장 비닐 등 개성공단의 생산품 및 원부자재였다.



• 도라산역 DMZ 안보관광객



• 미국 부시 대통령 도라산역 방문 침묵 서명(2002.2.20)

■ 경의선 철도 운행실적

운행구간	운행횟수	수송실적
도라산→판문(7.3Km)	222	55TEU

경의선 도라산역은 DMZ 인근에 위치해 있고, 남쪽의 마지막역이고,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많은 안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2012년에는 약 60만명(내국인 31만명, 외국인 29만명)의 안보관광객이 방문하였는데, 버스를 이용한 방문객이 9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차 이용은 7,300명(일평균 20명, 열차당 10명)이었다.

안보관광 코스는 임진각역(임진각)에서 출발하여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도라산역 등을 방문하게 된다. 열차를 이용하는 안보관광은 하루 2왕복 이용 가능한데, 문산역 출발은 오전 2번(10:00, 11:30), 도라산역 출발은 오후 2번(14:30, 15:30)이다.

도라산역은 국내외의 주요 인사들도 방문하였는데, 2000년 9월 18일 남북철도 기공식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하여 철도 침묵에 서명하였으며, 2002년 2월 20일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함께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이 침묵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 〈출입증명서〉

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가. 일반 현황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내에 도라산출입사무소를 두고 있다. 주요업무는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과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도라산출입사무소는 2006년 3월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2층에 지원재단의 전신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도라산출장소가 설치되어 업무를 시작하여,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의 출입계획 작성과 방문증 교부, 민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8년 1월 지원재단 출범과 함께 출입지원팀 도라산사무소로 개편하여 출입증 발급과 체류·거주 등록증 배부, 복귀 및 변경계획 관리 등 업무를 점차 확대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013년 5월 24일 도라산출입사무소로 직제를 개편하여 11월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 주요 업무 및 실적

첫째, 방문증명서 및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증명서 배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라산출입사무소는 통일부장관이 승인·발급한 증명서를 방문자에게 배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출입인원의 방문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2010년 2월 19일부터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신규 방문인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 2013년 11월말 현재 총 27,950건의 사전등록심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출입증 발급 및 체류(거주) 등록증 배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출입하려는 자는 2003년 12월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제8조에 따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하

는 출입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라 장기체류자, 거주자 역시 북한의 출입기관이 발행하는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가질 경우에 출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성을 방문하려는 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OK시스템)을 통해 출입증, 체류 및 거주등록증 등을 신청하게 되며, 관리기관을 거쳐 북측 출입기관(출입국사업부)의 승인 후 출입증은 관리기관이 발행하고, 체류 및 거주등록증은 북측 출입기관(출입국사업부)에서 발행하여 관리기관이 배부하였다. 이후 도라산출입사무소는 2008년 6월부터 출입증 발급 및 배부를, 2009년 10월부터 체류 및 거주등록증 배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2008년 3월부터 2013년 11월말 현재까지 출입증은 총 344,774명, 체류증은 14,282명, 거주증은 457명이 발급되었다.

셋째,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OK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개성공단 출입인원 및 물자 반출입 증가에 따라 출입계획 사전승인 등 복잡한 출입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OK시스템)이 개발되어 출입업무 전산화가 2008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출입증 발급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출입증 수수료 온라인결제시스템을 OK시스템과 연계하여 2008년 12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10. 현대아산

가. 일반 현황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개성관광과 개성공단 출입의 편의를 위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내 현대아산 도라산사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2004년 9월 1일 2명의 인원으로 상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06년 4월 16일부터 4명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 12월 5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개성관광이 운영되었던 시기에는 관광조장, 간호사 등을 포함 총 20여명이 근무하였으나, 개성관광이 중단된 이후 2013년 11월 현재 2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다.

나. 주요 업무 및 실적

주요 업무는 현대아산 직원과 개성현지 건설공사 및 판매시설(면세점, 식당 등)인력에 대한 출입지원(출입계획 작성, 출입/물자수송 관리, 방북자 교육 등)이며, 2007년 12월 5일부터 2008년 11월 27일까지는 개성관광 출입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개성관광 시에는 관광증의 발권, 관광객대상 안전교육, 관광객 차량운행, 관광객 불편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제52차 경의선 운영협의회(2013.11.13)

제3절 정책협의 및 기관 간 유대 강화

1. 「운영협의회」 운영

남북출입사무소는 업무 특성상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의 최북단이자 남북간 출입의 길목에서 통일부를 비롯하여 법무부·관세청·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문화재청·한국철도공사 등 출입심사기관과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유관기관 간 원활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고도의 협업체제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을 2009년 6월 8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였고,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남북출입사무소장)과 간사, 그리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근무하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있다. 현재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 15명과 읍서버 5명을 포함하여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협의사항은 2개 이상의 관계기관이 관련된 남북출입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의 신속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남북출입사무의 처리 및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또한 실무협의회도 수시로 개최하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사안발생시 상호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동해선 출입사무소는 2008년 7월 이후 금강산관광이 중단됨에 따라 운영협의회를 구

성하지 않았으나, 2013년 1월 16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 12명과 옵서버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 주요내용

- 목적 : 남북출입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 설치
 - 구성 : △위원장 1명(남북출입사무소장)과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각 1명의 위원 △간사 1명
 - 기능 : △2개 이상의 관계기관이 관련된 남북출입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남북출입사무와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장 또는 위원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의 : 매월 1회 개최
- 정보공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남북한을 왕래한 사람 또는 반출·반입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 남북한을 왕래한 사람 중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된 경우
 - 남북한 간 철도·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동대응
 - 관계기관의 신속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등 실시
- △경비·보안 계획 수립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보안점검 △사진촬영 등 제한 △상호협력 등



• 유관기관 합동 업무설명회(2010.4.5)

2. 기관 간 유대 강화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 간 출입·통행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 외에 유관기관 간 유대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남북출입사무소내 근무하는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친절 및 모범 직원을 각각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유관기관 합동업무설명회를 실시하여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설명함으로써 각 기관의 업무내용 및 특성을 파악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 체육대회 등도 수시로 개최하여 친목도모와 함께 각 기관 간 칸막이 문화를 없애고, 상호 협력하여 남북 간 출입경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록

2003 - 2013

역대 남북출입사무소장	80
남북출입 관련 주요 연표	82
주요 법규집	90
1. 고시·훈령	90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남북간 동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2. 남북합의서	108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3. 북한법규	134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 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거주 규정	
4. 운영규정	139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	

2003 ~ 2013

역대 남북출입사무소장

2003 - 2013

80

81



• 초대 김중태 •
2003.11.20~2006.01.31



• 2대 서성우 •
2006.02.01~2007.03.18



• 3대 윤정원 •
2007.03.19~2007.06.18



• 4대 김영탁 •
2007.06.19~2007.12.25



• 5대 정영조 •
2007.12.26~2008.12.25



• 6대 양창석 •
2008.12.26~2009.05.24



• 7대 문대근 •
2009.07.28~2011.03.17



• 8대 한기수 •
2011.03.18~2011.11.14



• 9대 설동근 •
2011.11.15~2013.04.24



• 10대 김의도 •
2013.04.26~2013.09.16



• 11대 서호 •
2013.09.17~현재

남북출입 관련 주요 연표

2003 - 2013

82
83

■ 2003년도

- 1.22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적 사항 합의
- 1.27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
- 동·서해지구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체결
-
- 2.5 **동해선 육로통행 개시**
- 동해선 육로를 통한 최초 남북 왕래(금강산 육로관광 사전답사 86명)
- 2.14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 금강산 시범 육로관광 실시
- 2.21 **경의선 육로 통행 개시**
- 경의선 육로를 통한 최초 남북 왕래(개성공단 사전답사 37명)
- 2.23 **일반인 대상(204명) 첫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
- 3.10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4차 실무접촉**
- 경의선, 동해선 궤도 연결공사 진행 협의
- 3.21 **경의선 남북연결 임시도로 개통**
-
- 4.26 **금강산 관광 중단**
- 현대아산, 북한의 금강산 관광 불허조치에 따라 잠정 중단 발표
-
- 5.7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5차 실무접촉**
-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장비의 제공 협력
- 5.17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노반공사 완료**
- 5.1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6.14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행사**
 - 동·서 두 곳의 군사분계선(MDL) 상에서 동시 진행

- 6.30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 7.2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열차, 차량운행을 위한 사무소 설치문제 협의

- 7.10 **남북출입사무소 운영 T/F 설치**
 - T/F에서 남북 출입경업무 수행

- 8.21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6차 실무접촉**
 -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열차, 차량운행을 위한 사무소 설치문제
 계속 협의

- 8.2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1차적으로 문산-개성간, 저진
 - 온정리간 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 협의

- 8.30 **경의선 임시도로 출입시설 준공**
 - 연면적 : 1,353㎡, 건축비 : 31억원

- 10.27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7차 실무접촉**
 -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원활한 진행 협의

- 10.31 **남북연결도로 남측구간 공사 완료**

- 11.20 **남북출입사무소 개소(2개과 24명)**

- 12.2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8차 실무접촉**
 - 차량운행사무소를 '0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 설치·운영 협의

- 12.2 **도라산역사 업무 개시**

■ 2004년도

- 1.29 **남북경제협력제도 제1차 실무접촉**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체결

- 2.25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9차 실무접촉**
 - 도로포장용 자재·장비를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 협력

- 4.8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 '남북 사이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

6.30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10차 실무접촉
- 경의선, 동해선 북측 분계역사 등 실무사항 협의

9.23 경의선, 동해선 도로 출입시설 착공식

12.1 동해선 남북연결 본 도로 완공

■ 2005년도

3.8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관리에 관한 고시' 발표(관세청)
- 개성공단 제조·가공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차량 통행 등의 특례 규정

4.25 금강산 임시도로 CIQ 개설·운영

7.28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구간 공사 조속 마무리
- 열차시험운행과 도로 개통식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남북 공동행사로 개최 합의

■ 2006년도

2.27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11차 실무접촉
- 열차시험운행과 철도·도로 개통식 행사일정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

4.30 경의선, 동해선 철도출입시설 준공

5.3 경의선 도로출입시설 준공

5.11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12차 실무접촉
-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 시험운행 실시 합의

6.12 동해선 도로출입시설 준공

■ 2007년도

1.21 차량적재형 남북이동 화물검색용 X-Ray 장비 운용
- 방북 화물차량 전수조사 실시

4.27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13차 실무접촉 제1차 회의
-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 채택

- 5.8 제5차 남북 장성급 회담
- 남북 열차 시험운행 군사보장 잠정 합의
- 5.13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13차 실무접촉 제2차 회의
- '남북 철도 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에 관한 합의서' 채택
- 5.17 남북 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
- 문산-개성, 제진-금강산

- 6.1 금강산 내금강 관광 개시
- 7.20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접촉(경의선출입사무소)

- 10.2 제2차 남북정상회담
- 노무현 대통령 일행 경의선 육로로 방북

- 11.20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채택 및 수정보충
- 12.11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 화물열차 정례운행
- 11.29 북한 김양건 통전부장 등 일행 경의선 육로로 방한
- 남북정상선언 이행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 협의 등

- 12.5 경의선 육로 이용, 개성관광 개시
- '08.11.28까지 110,549명
- 12.5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
- 12.10 도라산 물류센터 준공
- 12.11 문산-봉동간 남북 화물열차 정기운행 개시
- 12.11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제1차 남북공동 현지조사
- 12.12 개성-신의주 구간 철도 개보수 제1차 현지조사
- 12.13 제7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
- 12.21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제2차 남북공동 현지조사

■ 2008년도

- 2.12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등 협의

- 3.17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
- 3.27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상주 남측 당국자 11명 전원 철수

- 4.8 **북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 출입제한 조치**
- 열차운행사무소 직원 탑승 없이 화물열차 운행

- 5.14 **열차 퇴행운전 복귀**
- 북측 NLL 전방 50m 지점

- 5.28 **북측 전력사정으로 인해 열차운전 취급방식 수동으로 변경**

- 7.1 **남북 철도승무원 개성공단 출입금지**

- 7.12 **금강산관광 잠정 중단**

- 11.3 **경의선 출입차량 통행절차 간소화**
- 통일부-관세청과의 시스템 연계강화로 개성공단 출입차량 통행절차 간소화 결정

- 11.12 **북한, 12.1부터 육로 통행 제한 조치 실시 통보**
- 군사분계선을 통하는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조치 실시 통보

- 11.24 **12.1 조치 내용 통보**
- 동해지구 통행은 기존 1일 왕복 2회에서 매주 화요일 왕복 2회로 제한
- 서해지구 통행은 기존 1일 19회에서 1일 왕복 6회로 제한

- 11.28 **개성관광 및 남북열차운행 중지**

- 11.28 **도라산물류센터내에 컨테이너 검색시설 운용**

- 12.1 **북한, 「12.1 조치」 시행**
-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열차운행 차단
- 개성공단 남측 상주인원 880명으로 제한

- 2009년도

- 3.9 **북측, 개성공단 육로통행 제한**
- 한미합동군사 훈련 기간 동안 군 통신선 차단

- 3.21 **북측, 군 통신 및 개성공단 육로통행 전면 허용**

- 8.20 **북측, 12.1 통행 제한 조치 해제 통보**

- 10.28 **남북 군 당국간 통신선로 개선공사**

- 11.22 **북측에 발열 감지기 공급**
- 북측의 요청에 의해 임대형식으로 제공

- 12.18 **신종플루치료제 대북 전달**

- 12.22 **남북 관리구역 광케이블 연결 완료**

- 12.30 **남북 군 통신선 광케이블 가동**

■ 2010년도

2.8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3.2	개성공단 방문자 사전등록제 실시
3.31	하절기 통행시간 확대 제의 - 통행시간대를 30분 단위로 조정하고 횟수 3회 증가 요청 - 북측의 거부로 무산
4.26	출입통행계획 일원화 실시 - 통통시스템(통일부), OK시스템(관리위) 각각 출입통행계획을 입력하는 시스템에서 OK시스템으로 일원화 - OK시스템에서 통통시스템으로 출입통행계획 전송
4.30	금강산 관리인원 철수 시작
5.24	정부 「5.24 조치」 발표 - 개성공단, 금강산지구 제외 북한 지역 방북 불허 - 개성공단 생산활동은 지속하되 체류인원 축소 운영
5.27	6.2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 실시 - 개성공단 장기 체류자 268명
9.30	동해선 물류센터 준공
11.19	북한, 남북 적십자회담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최(11.25) 제의
11.24	연평도 포격도발로 개성공단 출경 중단(입경은 허용)
12.14	안보관광 허용(도라산 전망대 제외)

■ 2011년도

3.29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 제1차 회의(경의선출입사무소)
5.30	동해지구 군 통신선 차단 및 금강산지구 통신연락소 폐쇄
6.30	북측 세관, 여성운전자 여성세관 전담제 실시
8.23	금강산지구 남측 관리인원 16명 전원 철수 - 동해선출입사무소 업무 잠정 중단
12.26	김정일 사망 민간 조문단 경의선 육로 방북

■ 2012년도

2.10	국회 외통위, 남북특위 소속 국회의원 개성공단 방문
4.5	4.11 총선 부재자 투표 실시 - 개성공단 장기체류자 278명 대상
6.27	경의선출입사무소 출경 인원 100만명 달성
8.13	자연출경 제도 시행 - 차량고장, 교통체증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계획된 출경시간에 출경하지 못하였으나 긴급하게 출경하고자 하는 인원 대상
10.6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북한군 초병 1명 귀순
12.13	12.19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 실시 - 개성공단 장기 체류자 489명

■ 2013년도

3.27	북측 서해지구 군 통신선 차단
4.3	북측 개성공단으로의 인원과 차량에 대한 출경 부동의 - 남측으로의 입경만 허용
4.8	북측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발표
4.26	정부, 개성공단 남측 잔류인원 전원 귀환 결정
4.27	개성공단 잔류 기업인 126명 입경, 관리인력 50명 잔류
4.29	개성공단 잔류인원 43명 입경 - 북측 미수금 정산 요구로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 잔류
5.3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최종 체류자(7명) 입경
8.14	제7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 남북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 보장 - 우리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보장,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구성, 산하에 분과위 설치 등 합의
8.17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시설점검팀 방북
8.22	개성공단 기업관계자 방북
8.28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시설점검 및 선발대 금강산 방북
8.29	뉴질랜드 오토바이 여행단(5명), 경의선 육로를 통해 입경

-
- 9.10 서해지구 군 통신선 재개
- 군 통신선을 통한 출입경 계획을 북측에 전달
- 9.10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2차 회의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9.16부터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 실시 등
- 9.16 개성공단 정상 조업 재개
- 출입경 시간대 정상 운영(총 21회)
-
- 10.30 국회 외통위 국회의원(21명) 개성공단 방문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12.7.26] [통일부고시 제2012-2호, 2012.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적용한다.

제3조(반입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1. 국현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3.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4.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제4조(반출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1. 제3조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제5조(제한적 휴대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된다.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9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김역대상 물품
3.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i), (ii)에 따라 지정된 물품 중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iii)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
6.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

제6조(물품의 보관) 반출·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7조(보관물품의 처리)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북한과 남한을 방문하면서 휴대한 물품 중 반출·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과세 등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 제5조에 의한 반출·반입 승인을 받아 휴대한 물품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2호, 2012.7.26〉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시행 2013.5.6] [관세청고시 제2013-15호, 2013.5.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및 제43조와「관세법」제96조제1호 및 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북한지역을 직접 출입하는 남·북한 주민 및 외국인(이하 “남북한왕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휴대품신고서 제출 등) ① 모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남북한왕래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방문증명서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른 신고대상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동반가족이 있을 때 1인이 가족을 대표하여 신고하는 경우
2. 1일 수 차례 출입경하는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개발업자 및 관리기관(이하 “현지기업 등”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으로 별표3의 세관 성실신고자 확인표(이하 “확인표”라 한다)를 입경시 세관장에게 제시하는 경우

제4조(세관 성실신고자) ① 세관장은 현지기업 등의 소속 임·직원 중 수시 북한방문자에 대하여 과거 휴대품통관 실적 및 관세법령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지기업 등의 소속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한 때에는 별표3의 확인표를 발급하고, 세관 성실신고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에 해당 확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세관 성실신고자가 관세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세관 성실신고자 및 현지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확인표의 위조·변조·양도·대여 금지
2.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 통관 제도의 정기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세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신고대상물품) ① 남북한 왕래자는 입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여 반입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남북한 왕래자 세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취득의 경우를 포함한다)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1인당 관세면제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2. 제9조에 따른 특정물품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주류·담배·향수·농산물·한약재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과 긴급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4. 국현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서·영화·음반·조각물·사진·비디오테이프·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5.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제공되는 물품
6.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
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및 유독성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류

8. 영속·아편·코카엽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류
 9. 동물(고기·가죽·털 포함)·식물·과일채소류·그 밖의 식품류·농림축수산물
 10. 「별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라 한다)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예: 용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매·올빼미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핸드백 등)
 11.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12. 출경시 휴대반출 신고한 후 재반입하는 물품
 13. 남한지역으로 일시 입경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 후 출경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또는 작업용품
 14. 남한으로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 후 출경시 반출할 물품
 15.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우려 물품
- ②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빈번히 입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왕래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세 면제 횟수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때에는 남북한 왕래자 세관 신고서에 북한지역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한 물품이 없음을 표시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휴대품 검사) ① 세관장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 세관장은 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마약, 총기 등 반출입 규제물품 소지 혐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관광객, 학생 등에 대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은 남북한왕래자의 방문목적, 체재기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남북한왕래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8조(남북한왕래자 1인당 관세면제금액 등) ① 남북한 왕래자의 1인당 관세면제금액은 US\$300로 하되, 해당 연도 4회차 입경시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빈번히 입경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면세횟수를 확인하여 입경횟수와 관계없이 연도별로 4회차 입경시까지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1인당 관세면제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면세 통관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
 2.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3. 일시 입경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제9조(특정물품의 면세범위)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특정 물품의 면세범위는 품목당 기준에 의하되, 제7조제1항의 전체 취득가격 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며, 단위당 용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향수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주류 : 1병(1리터 이하)
2. 담배 : 껍질 200개비, 엽껍질 50개비, 기타 담배 250그램
3. 향수 : 60ml

② 세관장은 제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반출입 제한물품)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별표 1의 물품은 반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별표 1 가 중 1)에 해당되는 물품인지는 통일부장관이 통보한 목록에 따르되, 목록에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 입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이 허용된다고 고시한 별표 2의 물품
2. 「CITES」,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또는 「약사법」에 따른 규제물품
3.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제7조에 따른 물품

제11조(반출입 제한물품 등의 처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06조에 따라 이를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휴대품 유치서를 남북한 왕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여행자유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
2.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3. 제9조에 따른 반출입 제한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유치된 물품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물품의 통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에 계기된 물품은 제11조에 의해 과세통관한다.
 3. 제1항제3호의 물품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반입제한물품은 귀환시 반송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제1항제3호의 물품 중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은 관계 기관의 허가, 추천 또는 승인을 받은 후에 면세 또는 과세 통관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은 물품은 관세법 제207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반출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 제7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면세범위를 초과한 남북한왕래자유대품으로서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제외한 제세를 부과하고,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 제세를 부과한다.

제13조(휴대반출 신고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일시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승무원이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 북한지역으로 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남북한왕래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
3. 외국환법령 등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지급수단 등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제14조(휴대반출신고 및 확인) ① 남북한 왕래자 또는 승무원이 제1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물품을 휴대하여 출경하였다가 입경하는 때에 제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경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② 제13조제2호의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운송수단상의 적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출경하는 자는 외국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북한지역에 지급하기 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신고한 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승무원휴대품 인정범위) 남북한을 왕래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규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남북한왕래자유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통관 등은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 남북한왕래자가 제3국으로부터 북한을 거쳐 입경하는 때에는 제3국에서 구입한 여행자유대품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 준하여 법 제96조 및 제2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이 지급수단의 휴대반출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남북한왕래자 중 북한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체류물품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3조,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⑤ 그 밖에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 통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등을 준용한다.
-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15호, 2013.5.6〉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시행 2012.8.24] [법무부훈령 제863호, 2012.8.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려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와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국심사공무원)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려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 또는 출입국심사는 그 출입장소나 출입국항(이하 "출입장소 등"라 한다)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의 출입국관리공무원(다른 사무소나 출장소로부터 파견, 출장 등 지원받은 인력을 포함한다)이 행한다.

제3조(남·북한 왕래 국민에 대한 출입심사) ① 남·북한을 왕래하려는 국민은 출입장소 등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에 의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출입신고서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입신고서(이하 "출입신고서"라 한다)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출입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광목적으로 북한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방문증명서 제출을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의한 출입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출입신고서 등)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별표의 심사확인 도장(이하 "출발심사인"라 하는 심사확인 도장을 "출발심사인", 도착시에 찍는 심사확인 도장을 "도착심사인"이라 한다)을 찍어야 한다.

④ <삭제>

제4조(남·북한 왕래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 ① 남한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을 방문한 후 남한으로 되돌아오려면 출입장소등에서 여권 및 출입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출입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 및 출입신고서에 출발심사인 또는 도착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북한을 방문한 후 남한으로 되돌아오는 90일 이하의 단기체류외국인 및 등록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도착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북한으로 출발할 당시에 소지한 체류자격과 북한 방문 전 남한체류기간 및 북한방문기간을 공제한 체류기간을 도착심사인 하단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잔여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관광통과(B-2)와 체류기간 30일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을 거쳐 출국하는 국민에 대한 심사) ① 북한을 거쳐 출국하려는 국민은 출입장소 등에서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와 방문증명서 및 출입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에는 출국심사인을, 방문증명서 및 출입신고서에는 출발심사인을 각각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상의 출발심사인 하단에 출발지, 북한경유지, 행선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국심사를 받은 국민이 출국하지 아니하고 남한으로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출국심사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북한을 거쳐 입국하는 국민에 대한 심사) ① 북한을 거쳐 입국하려는 국민은 출입장소 등에서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와 방문증명서 및 출입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에는 입국심사인을, 방문증명서 및 출입신고서에는 도착심사인을 각각 찍어야 한다.

제6조의2(방문증명서 소지 북한주민에 대한 출입국심사) ①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입국하거나 남한을 거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장소 등에서 여권을 갈음하는 방문증명서 및 출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입국심사인 또는 출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제6조의3(출입신고서 제출의 생략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국민에 대하여는 전자식 카드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하고, 이 경우 출입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 또는 출입기록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신고서 또는 출입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자식 카드 방문증명서 또는 복수방문증명서 소지자에 대하여는 출발심사인 또는 도착심사인 찍기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식카드가 아닌 복수방문증명서의 경우 최초 출입시에는 출발심사인과 도착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제7조(북한을 거쳐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심사) ① 북한을 거쳐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장소 등에서 여권, 별지 제6호 서식의 북한경유출국사유서 및 출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교·공무·협정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북한경유출국사유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북한을 거쳐 출국하려는 등록외국인 또는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또는 상호주의 등에 의하여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외국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에 출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여권상의 출국심사인 하단에 출발지, 북한경유지, 행선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국심사를 받은 외국인이 출국하지 아니하고 남한으로 되돌아오는 경우 출국심사를 취소하고, 제4조에 따라 출입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발일은 출국심사일로 한다.

제8조(북한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① 북한을 거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장소 등에서 여권, 별지 제6호 서식의 북한경유 입국사유서 및 출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교·공무·협정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북한경유입국사유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에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제9조(국민 승무원의 등록 및 출입심사) ① 남·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에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국민은 승무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승무원 등록을 하려는 국민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 1장과 남북왕래 선박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승무원 등록을 마친 국민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무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남·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은 제3조에 불구하고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승무원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방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승무원등록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승무원명부를 통해 승무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원이 처음으로 남·북한을 방문하거나 마지막으로 남·북한을 방문하였다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전자식 카드가 아닌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에 출발심사인 또는 도착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제10조(외국인 승무원의 등록 및 출입심사)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남·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승무원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9조제3항에 의한 승무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승무원등록을 한 외국인이 남·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으로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불구하고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승무원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여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승무원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거나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가 남한으로 도착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 승무원의 출입심사에 관하여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승무원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거나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가 남한으로 도착한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신고서에 출발심사인 또는 도착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제10조의2(승무원상륙허가) ① 승무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 승무원이 상륙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승무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상륙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외국인 승무원에 대하여 15일 범위 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상륙허가를 하는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에 도착심사인을 찍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승무원에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2(복수승무원상륙허가)에 의한 복수승무원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3(출입항보고서 제출) 출입국관리법 제75조(보고의 의무)에 따라 출입장소 등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보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국기록 등의 관리)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심사 또는 출입국심사를 받은 사람의 출입신고서와 출입국신고서를 출입국신고서 정보처리사무소장(이하 "정보처리사무소장"이라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신고서 또는 출입국신고서 제출이 생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정보처리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출입신고서 및 출입국신고서를 지체없이 정보화처리하여 출입자명부 또는 출입국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신고서 또는 출입국신고서 제출이 생략되어 출입 또는 출입국사항이 출입자 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와 출입심사를 마친 때에는 출입국기록과 출입기록을 각각 생성하여야 한다. 기타 남·북한을 왕래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기록 및 출입기록관리에 관하여는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 출입국심사 또는 상륙허가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또는 출입국관리법령의 관련 규정

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863호, 2012.8.20〉

- ① 이 훈령은 2012. 8.24.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행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시행 2012.7.26] [통일부고시 제2012-2호, 2012.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 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남북한 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와 북한주민접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 절차) ①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단체관광객이 영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관광객이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단체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교부한 북한방문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단체관광객이 공동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성공업지구 방문자의 북한방문 절차) ① 개성공업지구 방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 5일 전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2호, 2012.7.26〉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13.5.31] [관세청고시 제2013-47호, 2013.5.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 등에 준하여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남북교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간 통행차량”이라 함은 관세법 제148조 제1항 및 제152조의 규정에 준하여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을 왕래하는 자동차 및 철도차량 등(이하 ‘통행차량’이라 한다)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철도차량”이라 함은 남북간 철로를 통해 왕래하는 궤도차량으로써 화차 및 객차 등을 포함한다.
3. “도로차량”이라 함은 접경을 출입하는 선박·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07. 3. 26 개정)
4. “관세통로”라 함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5. “통관역(또는 분계역)”이라 함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역을 말한다.
6.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통관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 열차”라고 한다.
7. “통관장”이라 함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8.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라 함은 남북간 접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에 대하여 세관장이 발행하는 입출국 증명서 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전자식 카드를 말한다.(‘07. 3. 26 개정)
9. “출입장소”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10. “출경”이라 함은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북한으로 나가거나 북한에서 입경한 차량이 다시 북한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11. “입경”이라 함은 북한에서 분계선을 통하여 남한으로 들어오거나 남한에서 출경한 차량이 다시 남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12. 기타 본 고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남북한 접경 운송수단의 출입

제절 통행차량의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제2-1조(통행차량의 등록) ① 관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3조 규정에 준하여 남북접경을 도로차량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 차량은 통일부장관이 ‘자동차운행승인서’에 의거 승인한 업체 및 차량에 한한다.(‘07.3.26 개정)

② 통행차량으로 반출입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육로운송회사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세관장은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 신청한 업체 또는 개인의 고유번호 등을 통행차량출입경수속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통행차량 증명서의 발급)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수단 중 도로차량으로 접경지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

록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받아 출입 시마다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출입 장소까지만 왕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07. 3. 26 개정)

1. 신청자 인적사항
2. 차종 및 차량등록번호
3. 운행목적 및 운행경로
4. 운행기간
5. 기타 남북간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 제2-3조(출입확인)** ① 접경지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시마다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통행차량출입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에 아래의 입경·출경 심사인을 날인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07. 3. 26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 전자식 카드를 차량에 부착하여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차량에 대하여는 입경·출경 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세관공무원은 필요시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용품 및 밀수 은닉장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사항을 통행차량출입경수속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출경심사인	입경심사인
출경	입경
200 . .	200 . .
○○세관	○○세관
규격 30mm×20mm	규격 30mm×20mm

제2-4조(등록차량 사전통보) 세관장은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통행차량등록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복한 측 세관에 사전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제2-5조(등록의 취소) ① 세관장은 통행차량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 증명서를 회수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지정한 운행통로, 운행지역 또는 운행기간을 위반한 경우
2. 통행차량이 밀반출입 물품의 운반에 사용된 경우
3. 통행차량의 운전자가 상대측 관할구역에서 범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통행차량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제2-4조 규정에 준하여 통보한다.

제2-6조(증명서 변경, 분실 및 운행기간의 연장) ①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여된 조건의 변경, 분실, 운행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변경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분실된 증명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최초 증명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절 통행차량의 도착 및 출발보고

제2-7조(도착·출발보고 및 제출서류) ① 통행차량의 운전자(이하 '소속회사 업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통관역장은 통행차량이 통관장 또는 통관역에 도착 또는 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149조 제3항, 제15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기간에 일정량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도로차량 운전

자는 최초출발보고 및 최종도착보고시에만 제출하여도 된다. ('07. 3. 26 개정)

1. 차량용품목록(서식 제7호)

2. 여객명부(서식 제8호)

3. 승무원 명부 및 승무원 휴대용품목록(서식 제9호)

4. 반입물품적하목록(서식 제11호) 또는 반출물품적하목록(서식 제12호)

5. 기타 북한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한 물품반출증, 출발허가서 등 관련서류

②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5호의 첨부서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서 정한 여객명부, 반입물품적하목록 또는 반출물품적하목록 등을 도착 전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관역장 또는 출입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서류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출발허가) 통관역장 및 차량운전자는 열차나 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까지 제2-7조 규정에 의한 「통행차량출발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통과차량의 보고 및 확인) ① 남북간 통행차량으로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여 승무원 및 승객의 승하차 또는 화물의 하역이나 적재 없이 단순 통과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의한 도착보고서 제출로 갈음하며, 별도의 출발허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과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0조(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 통관역장 또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착보고 또는 출발허가 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착보고 수리 또는 출발허가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정정·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입차량 검사 및 휴대품 통관 등

제3-1조(세관장의 확인 및 검사) ① 남북간 통행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정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 및 출발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착보고서 등 계반 서류를 확인(전자적 확인을 포함한다)하며, 밀반출입 또는 부정무역 방지를 위하여 출입경 차량과 적재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

제3-2조(화물 및 휴대품 통관) ① 통행차량의 승무원과 여객의 휴대품통관 및 일시수출입차량통관에 관한 사항은 「남북교역물품 통관에 관한 고시」, 「남북한 왕래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및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른다.

② 기타 반출입되는 화물처리에 관한 하선·적재,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의 절차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3-3조(운행지역의 제한) 남북간 통행차량의 운행지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점검세관장의 위임사무) 세관장은 통관장, 세관검사장 및 감시초소의 장비, 인력의 배치 운용 등 본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규정의 준용) ① 이 고시에 규정하지 않은 통행차량의 도착출발에 관한 절차는 「외국무역선 입출항, 전한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및 통행차량에 관한 고시」 및 「남북간 철도차량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07. 3. 26 개정)

제4장 보칙

제4-1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6-015호, 2006.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005호, 2007.3.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088호, 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097호, 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3-47호, 2013.5.31〉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2.7.27] [통일부고시 제2012-2호, 2012.7.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2. “부정기운행·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간을 운행·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운행·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남북한간을 운행·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행승인기준) ① 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승인의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6월 이내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항로 또는 노선에서 6월이내 부정기적으로 5회 이상 남북한간에 당해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선박 및 자동차의 정기운행에 한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선박의 운행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선박수리·선원교대·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 경유하기 위해 운항하는 경우
 2. 기타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4조(운행승인서의 재발급)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40호 서식의 운행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부분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② 운행승인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제5조(신청서류의 생략) 운행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에 영 제33조에 따른 해당 수송장비 운행승인인 신청절차를 거칠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협의) 영 제33조제7항에 따라 운행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정기운항승인을 하는 경우
2. 항공기 운항승인을 하는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통일부 장관이 운행노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운행결과의 보고)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 받은 자는 해당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를 부정기운행은 운행후 5일 이내, 정기운행은 운행후 다음달 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2호, 2012.7.2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13.5.6] [관세청고시 제2013-14호, 2013.5.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북간 접경지역을 왕래하는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이란 남북간 철로를 통해 왕래하는 궤도차량으로서 동력차, 화차, 객차 및 특수차 등을 말한다.
2. '관세통로'란 남북간 접경지역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로 및 우리나라의 철로중 세관장이 지정한통로를 말한다.
3. '통관역'이란 남북간 접경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철도역 중에서「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8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역을 말한다.
- ② 이 고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육로운송회사 등록) 철도차량으로 남북간 반출입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육로운송회사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이를 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출발·도착보고 및 제출서류) ① 통관역장은 철도차량이 통관역을 출발하거나 통관역에 도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출발·도착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용품목록
2. 별지 제4호서식의 여객명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 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
4. 별지 제7호서식의 반입물품적하목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출물품적하목록
5. 그 밖에 북측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한 물품반출증, 출발허가서 등 관계 서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 중 승무원휴대품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제출서류 중에서 여객명부, 반입물품적하목록 또는 반출물품적하목록 등을 해당 철도차량의 도착 전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관역장이 관련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출발허가) 통관역장은 열차가 통관역을 출발하기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철도차량 출발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출발 및 도착보고의 정정·취소) 통관역장은 출발허가 또는 도착보고 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출발허가 또는 도착보고수리 전까지 철도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출발·도착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세관장의 확인 및 검사)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밀반출입 또는 부정무역의 방지를 위해 출입경 철도차량과 적재물품에 대하여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제2항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① 철도차량으로 반출입되는 물품 및 철도차량의 승무원과 여객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은「남북교역물품 통관에 관한 고시」및「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 ② 철도차량으로 반출입되는 화물의 하자·적재,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의 절차는「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및「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

시」 및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14호, 2013.5.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남북합의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2.12.6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남과 북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에서 차량운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까운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사무소를 두며 이를 남북 “차량운행사무소”라고 부른다.

2. 남과 북의 분계주차장 사이 도로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다른 운행노선을 오가는 각종 차량(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연결차 등)을 “운행차량”이라고 한다.
3. 차량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사상, 물건의 파손, 분실 등을 “사고”로 본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상대측 차량의 안전운행 및 운전사를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2. 군사분계선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이 운전사들과 운행차량에 부여한 운전면허자격 및 기타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제3조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① 운행하는 차량의 통제문제
 - ②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처리
 - ③ 운행구간에서 정상적인 안전점검의 실시
 - ④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 ⑤ 기타 쌍방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 ①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은 쌍방 당국이 임명한다.
 - ② 쌍방은 대표와 위원들을 교체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③ 공동위원회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남북사이의 관례대로 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는 쌍방의 차량운행사무소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차량운행사무소와 제3의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차량의 운행절차와 방법 1. 상대측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에게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2. 양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받으면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결과를 운행 날짜 이전에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준다.
3. 차량운행허가증을 받은 운전사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통과수속을 거친 후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서만 운행할 수 있다.
4. 운전사는 운행과정에서 상대측 교통규정, 신호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6. 운전사가 상대측 지역에서 운행노선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 또는 교통기관에 제기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승인결과를 운전사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7. 남과 북은 상대측 운전사가 운행목적, 교통질서,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하고, 심한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한 차량과 그 운전사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를 거쳐 돌려보낸다.
8. 남과 북은 자연재해, 도로보수 등으로 차량운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 그 이유를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주며 그 이유가 제거되면 즉시 운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5조 상호통보 및 통신·연락 1. 남과 북의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즉시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운행차량의 운행통지와 상호통보를 위하여 차량운행사무소 직통전화, 모사전송장치(팩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락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정보교환 1. 남과 북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기측의 교통규정, 신호체계, 도로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2. 남과 북의 차량운행에 대한 정보자료를 일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탑승 인원 및 적재 화물에 대한 제한 1. 차량운행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태울 수 없다.

- ① 마약중독자, 전염병환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 ③ 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⑤ 위 각호에 준하는 인원이므로서 차량에 태울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차량에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다.
- ① 각종 무기류, 흉기류, 화약류 등 공공안전에 위협한 물품
 -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의약품, 각종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 ③ 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 ④ 물품의 성질 및 수량으로 보아 여행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 ⑤ 위 각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실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8조 통행료 납부 및 의무면제 1. 남과 북은 운행노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측의 운전사와 차량에 부과되는 차량 등록, 검사 및 이와 관련한 수수료 및 각종 요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동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행안전 및 사고처리 1. 남과 북은 운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구조조치를 취하고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각종 편의를 보장한다.

2. 차량의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측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상대측 연락관 또는 인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사고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쌍방이 동일한 인원수로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 ① 부상자 규모가 10명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② 차량과 화물의 손실정도가 EURO 10,000 이상인 경우
 - ③ 사고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상대측이 사고조사에 참가할 필요가 있을 때
4. 남과 북은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결과가 밝혀진 즉시 그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차량의 운행허가기간이 지나갔으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실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0조 손해배상 1. 차량의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사의 귀책 사유로 판명되는 경우 피해자

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사고원인이 쌍방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책임지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차량의 운전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쌍방이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고장시 조치 1. 차량이 운행구간에서 고장 발생시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대측 구간에서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 연료 또는 부속품이 부족할 경우 상대측에게 기술 또는 부속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측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항목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3조 적용범위 1. 남과 북은 운행차량에 대하여 이 합의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은 도로 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및 관례에 따른다.

2.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차량의 운행방법은 쌍방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5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12월 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윤진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1부위원장 박창현

부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남 측 〉	〈 북 측 〉
통행차량등	수송수단
교통수단	운수수단
출입심사	출입검사
출입장소	출입지점
훼손	오손
상황	정황
주거	주택
범칙금	벌금
부과하거나	물리거나
상호	호상
구성	조직
발생하는	제기되는
문본	문건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4. 4.13]

제1조 정 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을 분계역이라고 하며 분계역에는 열차운행사무소를 둔다.

2. 남과 북은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열차”라고 한다.
3. 운행열차의 승무원들과 운행구간에서 작업하는 운영 및 보수인원들을 “철도직원”이라고 한다.
4. 운행구간에서 발생하는 인명의 사상, 차량 및 철도 시설물의 파손, 화물의 분실 및 파손을 “사고”로 간주한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안전, 철도직원과 승객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2.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열차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 철도직원이 소유한 자격증과 차량에 부여한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4.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하며,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철도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① 수송 및 열차운행계획, 관련 절차문제
 - ② 운임, 요금 및 보상 등에 관한 문제
 - ③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처리 및 책임에 관한 문제
 - ④ 철도시설물에 대한 검사 및 보수문제
 - ⑤ 기타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쌍방 당국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11명으로 구성한다.
 - ②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의 명단은 회의에 앞서 상호 상대방에 통보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간의 협의에 따라 비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는 교대로 쌍방의 분계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동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사이에 분계역장회의(이하 “역장회의”라 한다)를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역장회의에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운임정산, 기타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한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합의문에서 효력발생일을 정한다.

제4조 열차운행 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의 열차운행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 사이 일일열차운행계획과 실행에 대한 통지시간은 아침 8시까지로 하되,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열차승무원, 기관차, 차장차는 남과 북이 1년(年)을 단위로 교대로 담당하며, 그 교대는 해마다 1월 1일 아침 8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 시작은 남북열차운행 개통식전에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3. 남북간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정기열차와 임시열차로 구분하며 열차의 운행회수 등 세부적인 사

항은 공동위원회 또는 역장회의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4. 상대측 지역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차 승무원들과 열차 차장들은 반드시 상대측 철도의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운행을 디젤 기관차로 견인하며, 운행구간안의 열차속도는 60km/h 이하로 한다.
6. 남과 북은 열차운행구간에 대한 폐색방식을 연동폐색방식으로 한다.
7. 분계역에 도착한 열차에 대한 입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기관차가 소속된 분계역장의 동의를 받아 열차 체류시간내에 입환작업을 할 수 있다.
8. 상대측 열차 승무원들에게 주는 지시는 당일 분계역장이 서면으로 전달하며, 열차가 체류하는 동안 외부경비는 열차가 운행되는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9. 남과 북은 자기측 분계역에서 상대측 분계역까지 떠나는 열차에 대한 검사와 원활한 운행 및 안전을 책임지며, 자기측 분계역에 도착하여 인수된 열차는 해당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객·화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빠른 시일안에 상대측에게 돌려보내야 하며, 인계·인수 및 그 절차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 수송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수송절차와 방법, 객·화차의 사용과 인도·인수 등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따로 제정한다.

2. 남과 북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수송요구서와 내용을 반영한 <월수송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매일 다음날의 열차편성 및 운행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역장회의에서 정한다.
4. 남과 북은 상대측에 통지한 <월수송계획>과 <일일열차운행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측에게 통지하여 합의하고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자연재해, 사고발생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측에 통보하고 열차운행을 조정·변경시킨다.

2. 사고발생시 원인조사를 위하여 상대측이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고조사 결과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사고복구비용과 피해배상은 사고를 책임지는 측에서 하며, 사고의 책임이 쌍방에 다같이 있거나 책임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지며 사고복구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자연재해로 생긴 사고와 손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
5. 사고복구시 상대측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측은 그에 응하여 공동으로 복구할 수 있다.
6. 남과 북은 상대측의 사고복구를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차량고장시 대책 1. 운행과정에서 열차가 고장난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차량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열차가 운행되는 측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차량의 고장과 관련하여 상대측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③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지원, 연료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2. 차량의 고장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관사는 즉시 그 사실을 운행지역의 분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쌍방 분계역내에서 철도직원들의 체류 1. 남과 북은 인계·인수작업과 철도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측에 철도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2. 상대측 분계역에 파견되는 철도직원들이 운행하는 열차 또는 자기측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철도 또는 도로로 상대측 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호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철도직원직명표(부록1)에 명시된 인원들은 상대측 분계역을 출입할 경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부록 2-1) 또는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상시출입증(부록 2-2)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상대측 지역을 드나드는 철도직원들은 해당 지역측의 법령과 규정들을 지켜야 하며 분계역의 지

정된 지역안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5. 쌍방의 열차승무원들은 분계역 사이의 구간에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6. 남과 북은 상대방 철도직원들에게 필요한 사무실, 숙소, 난방, 조명, 전화 등 편의를 제공한다.
7.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철도직원들이 자기측에서 체류하는 기간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응급구조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후송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 탑승인원 및 적재화물에 대한 제한 1. 운행하는 열차에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태울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전염병·정신병환자, 마약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 ③ 철도운행질서 및 사회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열차에는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각종 무기류, 총포탄류, 흉기류, 폭발류 등 공공안전에 위협한 물품
 -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 ③ 기타 열차운행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10조 운임 남과 북은 수송운임과 각종 요금을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라 미달러(US\$) 또는 EURO화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사후 정산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통신설비 및 이용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열차운행 관리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자기측 분계역 운전정리실에 다음과 같은 통신설비들을 갖추고 운영한다.

- ① 직통전화 및 운행중인 기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무선통신설비
 - ② 모사전송장치(FAX)
 - ③ 기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장비
2. 남과 북은 운행열차의 무선통신설비의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FM 단신방식 150~170MHz로 하며 정기적으로 시험통화를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분계역에 설치된 통신설비들을 열차운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상호 통보 1.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운행구간의 선로에 이상이 있거나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 ② 도착하는 여객이나 화물을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③ 화물의 수송계약 취소로 변동이 있는 경우
 - ④ 자연기후적 영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⑤ 기타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3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분계역 사이에서만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적용하되 쌍방 당국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운행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열차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쌍방 당국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 및 보충되는 조항은 제16조의 절차를 거쳐 발표된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교환하고 각기 발표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는 폐기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4월 1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 영 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2004.1.29, 2005.8.1 발효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이 아래부터는 '지구'라 한다)의 출입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측의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

2. "통행차량등"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 열차, 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3. "출입"이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드나드는 것을 의미한다.
4. "체류"란 인원이 지구에서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5. "출입통로"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한 통로를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과 북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2.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3조 출입통로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해상로의 출입통로를 합의하여 정한다. 이미 남측 지역과 지구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출입통로는 이 합의서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인원의 출입절차 1.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한다.

2. 지구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인원은 체류 또는 거주를 확인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여러번 출입할 수 있다.
3. 14세에 이르지 못한 인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해당 증명서에 동반자로 기재하고 출입할 수 있다.
4.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인원은 해당 나라의 여권과 함께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등의 출입절차 1. 자동차는 자동차 통행과 관련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정해진 출입통로로 출입한다.

2. 선박은 선원과 승객명단을 비롯한 선박자료와 입출항시간을 북측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출입한다.
3. 열차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한다.

제6조 출입심사 1. 북측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하여 출입장소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필요한 출입심사, 세관검사와 검역을 한다.

2. 북측은 지구의 안전과 인원, 통행차량등의 출입상 편의를 보장하며, 남과 북은 지구의 안전과 간관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와 검역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3. 북측은 통행차량등에 승차 또는 승선하여 심사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7조 체류 1. 인원은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입 및 체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인원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48시간 내에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지구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3일전에 남측 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 내에서 이미 등록된 체류기일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구 출입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 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까지 체류하는 인원
 - 나. 지구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 다. 남과 북이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6. 인원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제정된 질서에 따라 장기체류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제한대상 북측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해당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자
5. 남과 북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자

제9조 긴급구조조치 북측은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며 남측은 이에 협력한다.

제10조 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4.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5.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6. 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북측과 해당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조 지구와 지구밖 북측지역 사이의 출입 인원과 통행차량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정보교환과 협력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며, 상대방의 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 합의서의 적용범위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수정·보충되는 내용은 이 합의서 제16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 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4년 1월 29일에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1월 29일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북 남 상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정세현	내각 책임참사 김령성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 남 측 〉	〈 북 측 〉
통행차량등	수송수단
교통수단	운수수단
출입심사	출입검사
출입장소	출입지점
훼손	오손
상황	정황
주거	주택
벌칙금	벌금
부과하거나	물리거나
상호	호상
구성	조직
발생하는	제기되는
문본	문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부속서는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이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열차운전취급, 화물운송, 철도시설·전기분야 유지보수, 차량 인도인수, 사고처리·손해배상책임·편의보장 및 활동관계 등 남북간 열차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하여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남과 북이 정한 운행구간에서의 열차운행에 관련 하여서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및 부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또는 분계역장회의에서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정의) 이 부속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운행구간”이라 함은 분계역(역구내 포함)간을 말하며, 이 구간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된 차량을 운행열차라 한다.
- ②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차량을 말한다.
 1. “동력차”라 함은 동력을 가진 차량으로서 열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화차”라 함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3. “차장차”라 함은 화물열차 또는 공사열차의 후부에 차장을 승무시키기 위하여 연결하는 차량으로 차장실 설비를 갖추고 수동제동장치, 차장변, 조명장치, 공기압력계 등이 구비되어 있는 차량을 말한다.
 4. “특수차”라 함은 특수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사고복구용차, 모터 작업차 및 시험차 등으로 객차와 화차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말한다.
 5. “불량차”라 함은 고장으로 정상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을 말한다.
- ③ “분계역”이라 함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열차를 정차하고, 화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 ④ “분계역장”이라 함은 분계역의 역무전반과 분계역 사이의 운전취급업무의 담당책임자를 말한다.
- ⑤ “운전보안장치”라 함은 폐색장치, 신호장치, 연동장치, 선로전환장치, 제동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운전경계장치, 열차방호장치, 운전용통신장치, 등을 말한다.
- ⑥ “유효장”이라 함은 열차를 정차시키는 선로 또는 차량을 유치하는 선로의 양끝에 있는 차량접촉 한계표지 상호간의 길이를 말하고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에 대하여는 출발신호기까지의 길이(자동화된 구간에서는 전기막이 이음목 사이의 길이)를 말한다.
- ⑦ “퇴행운전”이라 함은 열차가 운행도중 최초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⑧ “추진운전”이라 함은 동력차를 맨 앞으로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⑨ “폐색구간”이라 함은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한 구역을 말한다.
- ⑩ “고장”이라 함은 열차가 정상적인 운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차량기기 및 장치의 오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의 비정상 상태를 말한다.
- ⑪ “수리”라 함은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차량상태를 운행 가능한 상태로 복원시키는 정비작업을 말한다.
- ⑫ “철도안전사고”라 함은 열차운행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또는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⑬ “철도사고”라 함은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로 열차사고와 건널목사고, 사상사고를 말한다.
- ⑭ “일반안전사고”라 함은 철도자체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열차운행 중단과 지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화재사고, 설비사고 등을 말한다.

- ⑮ “운행장애”라 함은 열차 또는 차량 운전에 일시적인 지장을 준 것으로서 철도사고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⑯ “철도시설의 재해”라 함은 기상조건, 지진,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⑰ “인적피해”라 함은 안전사고로 인하여 철도직원, 여객 또는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 ⑱ “사망자”라 함은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자 또는 사고로 부상 당한 후 72시간 이내 사망한자를 말한다.
- ⑲ “부상자”라 함은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3주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것을 중상, 3주일 미만을 경상이라 하고, 신체의 활동부분을 상실하거나 혹은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부상도 중상으로 한다. 다만 사고당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정상”판정을 받고 여행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⑳ “물적 피해”라 함은 안전사고로 인하여 본 부속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건물이나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동식물이 사상, 부상 또는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를 말한다. “수습”이라 함은 철도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고와 쌍방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열차운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직적인 조치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운전

- 제4조(열차운행)** ① 운행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승무원과 동력차 및 차장차는 홀수년도에는 남측이, 짝수년도에는 북측이 담당한다. 다만, 남북당국간 합의를 통해 운행년도가 아닌측의 열차, 승무원으로 운행구간을 운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운행열차승무원은 경계(군사분계선)를 기준으로 반드시 해당측의 규정과 지시 및 운전설비조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열차정상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호교환하고, 만약 수정·보완으로 열차정상운행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즉시 상대방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열차운행횟수, 운전시간 등 년간 열차운행계획은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열차운행은 낮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한한다.

- 제5조(운행구간)** ① 운행구간은 남과 북이 정한 분계역간의 운행구간으로 한다.
- ② 분계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남측	북측	비고
경의선	도라산역	판문역	

- ③ 운행구간을 연장하여 운전해야 할 경우에는 쌍방간의 합의로 정한다.

- 제6조(일일열차운행계획)** ① 쌍방의 분계역장은 일일열차운행계획을 매일 08시 이전까지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서면 통보하며 오전 8시부터 유선전화로 재확인 한다. 다만, 분계역장회의에서 사전합의 결정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 ② 일일열차운행계획 통보 이후 변동사항발생 시에는 즉시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서면 또는 유선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일일열차운행계획 통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열차번호, 기관차번호, 편성량수, 차종, 품명, 운행시간
 2. 승무원 명단
 3. 승무원인 및 화물수송량
 4. 열차출발예정시간
 5. 차량복귀 요구일
 6. 기타 열차운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열차의 취급)** ① 쌍방의 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 상호간 운행열차 폐색취급 합의 없이는 운행

구간에 열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운행열차는 상호 합의하여 정해진 운전시각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는 열차출발 또는 도착 시에는 즉시 상대측 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에게 출발 또는 도착시각, 편성량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운행구간의 운행열차는 역이외 구간에서 정차할 수 없다. 다만, 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으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무원 소속 분계역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분계역장은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 받은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차 후 출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운행구간의 운행열차는 퇴행·추진운전 할 수 없다. 다만, 선로 또는 열차의 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시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쌍방간의 분계역장이 합의하여 승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 ⑥ 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는 열차출발시 마지막 차량이 출발선 최종전철기를 벗어날 때까지 감시하여야 하며 도착시에는 도착 3분전에 나가 열차를 감시하고 편성량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의 분계역장 지시에 의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25km/h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하고, 차량은 휴대용 무선전화기로 유도하여야 한다.

- 제8조(연동폐색취급)** ① 운행구간에 운행열차를 진입시키려 할 때에는 분계역장이 협조하여 폐색수속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의 취급은 운행열차를 진입시킬 시각 10분 이전에는 할 수 없다.
 - ③ 폐색취급 후 출발하려고 하는 열차에 대하여 진행신호를 현시 하였을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연동폐색수속(절차)에 대하여는 분계역장회의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 제9조(열차조성)** ① 열차조성은 열차출발시각 30분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열차운행 지장여부 확인은 각 측에 파견된 열차인수·인도 요원이 합동으로 시행 한다.
 - ③ 열차의 길이는 쌍방의 분계역 유효장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하며, 분계역장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④ 열차에는 객차와 화차를 혼합연결 할 수 없으며, 파손차량은 각 측의 열차운행사무소장의 검사를 받은 후 운전도중 분리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무선전화기의 사용)** ① 열차 또는 차량에서 무선 전화기의 사용은 쌍방이 정한 운행구간에서 남과 북이 상호간에 정한 공용주파수를 이용한 무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취급을 할 때에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운전정보를 교환할 때(역-기관차-보수차(승무원) 상호간)
 2. 운전상 위급을 요하는 사항을 통고할 때
 3. 열차 또는 차량의 입환취급 및 각종 전호를 할 때
 - ③ 열차무선전화기의 호출방법은 [부록2]에 의한다.
 - ④ 기관사(승무원)은 출고시 기관차용 무전기와 휴대용(비상용) 무전기를, 역원은 근무교대시 역용 무전기를, 작업자는 작업출무전 휴대용 무전기의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열차 운행중 기관차 무선전화기 고장 또는 장애시에는 휴대용무전기를 사용한다.
 - ⑥ 열차운행에 참가한 모든 무선전화기는 언제나 동작상태에 있어야 한다.

제3장 화물운송

제11조(운송의 의무) ① 쌍방 철도는 다음과 같은 화물운송에 대하여 본 부속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운송한다. 다만 기본합의서 제9조 2항에 정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

1. 쌍방간 화물운송계획에 포함된 화물
2.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 화물
3. 송화인이 본 부속서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

② 쌍방철도의 역명은 자기측 규정정에 의하여 공포한 역명을 사용한다.

제12조(운송의 제한 또는 정지)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화물운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운송의 제한 또는 정지
2. 전체 또는 부분 일시정지
3. 탁송의 거절 또는 조건부 수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정지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측에 통지하여야 하며, 자기측 제규정에 의거 공포를 요할 때에는 공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송기한) ① 쌍방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송기간 : 1일
2. 수송기간 : 매 200km마다 1일

② 천재지변이나 통관 등 쌍방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운송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1건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조건을 구비한 화물은 1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송화인, 수화인, 발역, 착역, 탁송일시, 취급종별 및 운임요금 지급방법이 같을 것
2. 차급화물은 1차에 적재할 수 있는 수량

제15조(운송이 허가되지 않는 물품) ① 쌍방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운송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본합의서 제9조 2항에 정한 화물
2. 쌍방 어느 한 쪽에서 운송을 금지하는 화물

② 본 부속서에 의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허가되지 않는 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억류시켜, 화물을 억류시킨 철도측의 법령과 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특정조건 하에 운송이 허가되는 물품)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화물은 수송설비를 갖추고 수송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2. 자기차륜의 회전으로 운송되는 철도차량
3. 귀중품 및 위험품
4. 사체 및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동물
5. 부패하기 쉬운 화물

② 제1항에 규정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송화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7조(운송계약의 체결 및 결제수단) ① 출발역 역장은 이 부속서에 의하여 송화인과 상대방 구간을 포함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다.

② 분계역장은 출발역 역장에게 인계 받은 송장과 해당 화물을 상대방 분계역장에게 인계인수함으로써 송화인과 상대방 철도간에 화물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운임은 자기측 화폐단위와 미달러 또는 유로화로 병기하며, 당해 연도 초 공동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④ 운임은 자기측 구간은 자기측 운임체계를 적용하고, 상대방 구간은 상대방 운임체계를 적용하여 상호 정산하되, 별도 운임체계 필요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8조(의무이행의 담보) ① 송화인과 수화인이 비용납부 등 제반 의무사항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할 경우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속한 측의 화주가 대리 이행할 책임을 진다.

② 쌍방은 운송계약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 수수를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는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송장) ① 쌍방의 철도화물에 사용되는 송장은 국제철도화물협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한다.

② 송장에 사용되는 용어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20조(송화인이 알려야 할 사항) ① 송화인이 화물을 탁송할 때에는 화물 각각에 대하여 정확하게 송장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출발역 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송화인은 송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발역

2. 도착역
3. 송화인과 수화인
4. 화물의 품명 및 포장의 종류, 성질
5. 화물의 품명마다 그 개수(산적(散積)인 것으로서 개수를 계산하기 곤란한 것은 제외한다), 실
중량(kg), 부피(m³)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화물의 포장) ① 운송도중 성질·형상·중량변화가 예상되는 화물은 감량 또는 훼손이 발생하
지 않도록 충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② 용기나 포장없이 화물운송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쌍방은 책임지지 않으며, 그로 인한 철도
측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송화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분계역에서 화물의 인도인수) ① 분계역에서 화물의 인도인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유계차와 조차에 적재한 화물은 봉인에 근거하여 인도인수하며, 상·하부의 문고리 부분에 봉
인한다.
2. 컨테이너화물은 세관봉인에 근거하여 인도인수 한다.
3. 산적화물을 분계역에서 계량한 결과 송장의 중량과 상이한 경우에는 송장의 중량을 정정하
여 날인하고, 인도인수서에 해당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계역에서 계량한 화물이 도
착역에서 계량한 결과와 상이 할 경우에는 분계역에서 계량한 중량으로 한다.
4. 인도인수시 화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계량 또는 관계자 입회하여 화
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계중기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중량을 계량하는 비용은 상호 면제한다.

③ 송화인이 송장에 신고한 중량과 상이할 경우 쌍방 인도인수 책임자가 서명한 기록서(국제철도화
물협정 제18조에 정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결산한다

제23조(운송계약의 변경) ① 쌍방 철도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변
경할 수 있다.

1. 출발역에서 화물을 되돌려 받는 경우
2. 도착역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화인을 변경하는 경우

② 1항의 운송계약 변경시 자기측 분계역장을 경유하여 상대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계약 변경은 국제철도화물협정 별지 제17호(운송계약변경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제출한 신
청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24조(화물운송의 책임) ① 쌍방은 송장에 의거하여 화물이 도착역에서 수화인에게 인계되는 시점까
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쌍방은 화물과 송장을 접수한 시점부터 운송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운임수수 및 정산) ① 운임은 남북 각각 자기측 운임체계에 의하여 적용한 운임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후 최종운임은 발송역에서 송화인에게 수수한다.

② 쌍방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비용정산협정을 체결하여 정산 처리한다.

제4장 시설, 전기 유지보수

제1절 선 로

제26조(선로의 보전) ① 운행구간내 쌍방의 선로는 열차 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
로 보전하여야 한다.

② 남북관리구역의 선로 등 시설물의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선로 순시는 매일 최초열차 운행 전에
도보 또는 자주식 장비로 시행하고 순회결과를 상대측의 분계역장에게 통보한다.

③ 열차운전에 지장 또는 재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로를 감시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가능여부
를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행구간내 선로의 작업시에는 작업예고 표지판을 세우고 열차는 주의운전을 하여야 한다.

- ⑤ 각종선로의 제표(거리표, 구배표, 곡선표 등)는 수시로 점검하여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⑥ 건물목에는 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필요시 직원을 배치하여 열차 및 차량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⑦ 건축한계(레일두부 상면에서 높이 6,450mm, 궤도중심부에서 폭 2,100mm) 내에는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에 저촉되는 물건을 둘 수 없다. 다만, 작업상 필요한 경우로서 열차 및 차량의 운전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쌍방의 운행구간내 선로변경 및 개량 시에는 완료된 관계도서(선로평면도, 선로종단면도, 정거장 평면도, 선로일람약도, 구조물도 등)를 상대측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 ⑨ 운행구간중 남북관리구역내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및 기계작업시 작업자는 쌍방이 인정하는 공동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 전에 작업내용, 작업예정시간, 작업인원, 작업위치 등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하고, 분계역장은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및 승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및 선로순시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열차운전취급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6조(일일열차운행계획)에 의거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한다.

제2절 전기통신 및 신호

제27조(전력계통 운영) ① 역사 및 역간 전력계통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고 별도의 사항은 분계역장 간 합의하여 정한다.

1. 분계역간의 전력공급은 자기측 분계역에서 경계(분계선)구간까지 고압배전 선로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계역사내 전원공급은 자기측 전력계통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전력설비 유지보수) ① 분계역간 고·저압 전력설비는 쌍방이 정한 일정 주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날짜를 정하여 상호 통보하고 시행한다.

- ② 전력설비 점검시 사전에 점검내용, 방법 등을 통보한다.
- ③ 점검보수 시 한계지점간 쌍방의 관리구간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구간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통신설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① 통신설비의 운영은 분계역장이 지정하여 관리한다.

- ② 무선, 유선통신 설비에 대하여 쌍방은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통신설비를 점검할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내용 및 방법 등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분계역장은 통신고장 등으로 열차 출발 및 도착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호 연락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 ⑤ 비상시를 대비하여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승무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점검보수는 자기측 분계역에서 경계(분계선)구간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구간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신호설비 유지보수-연동검사 포함) 신호설비의 유지보수 등은 다음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

- ① 보수작업(연동검사 포함)의 시행
 1. 쌍방은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협의한 날짜까지 상대측에게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유지보수 계획서를 통보 받은 자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합동보수가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조정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계획서에 의한 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이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시간, 내용 및 방법 등을 분계역장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합동보수를 시행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이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운전협의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수작업이 완료되면 장치가 정상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분계역장에게 완료통보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계역장은 장치가 정상상태임을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장애 및 긴급보수작업의 시행
 1. 장애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시간 및

- 내용 등을 분계역장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2. 쌍방은 단독으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대측에게 합동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 3. 보수작업 완료 후 작업시간, 사유, 조치사항 등을 상대측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장치의 사용 또는 중지
 - 1. 신호보안장치를 사용·중지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사고 또는 장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계역장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을 중지한다.
 - 나. 신호기 및 건널목보안장치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표시 또는 고장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다. 선로전환기류의 사용을 중지할 때에는 분계역장에게 선로전환기의 설정을 요구하여 설정하고 관계가 있는 진로도 사용·중지 한다.
 - 라. 연동장치 취급버튼의 사용을 중지 할 때에는 그 취급 버튼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설비도 사용을 중지한다. 이 경우 취급버튼에 카바를 씌우거나 테이프를 붙여서 취급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 2. 사용을 개시할 때에는 장치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역 구내에 있어서는 분계역장에게 취급·중지 및 작동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5장 차량 인도인수

제31조(차량 인도인수 기본원칙) ① 쌍방간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은 조립부품이 완비된 양측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열차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의한다. 단, 별도 협의가 있을 때는 지정된 차량을 사용 할 수 있다.

- ② 자기측 구간에서 운행되는 상대측 차량으로 자기측 화물운송은 할 수 없으며, 상대측으로 운송될 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빈차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상대측 차량의 체류기간은 최대한 단축하여야 하며, 최대운용일수는 화차는 7일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③항의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예정 1일전까지 그 사유 및 차량의 현재위치, 복구에정일 등을 상대측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반환기일이 지난 차량은 반환기일까지의 지연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지연료는 운임과 연계하여 분기별 분계역장회의에서 정산한다.
- ⑤ 상대측의 요청이 있을 시 개별차량에 대한 현재의 위치 및 차량상태를 파악하여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차량의 유지보수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측에서 책임진다. 운행열차의 운용경비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불량 차량의 위탁검수비 등 따로 정한 수리비용은 운임에 연계하여 정산토록 한다.
- ⑦ 남측 차량의 차호 인식은 현재 남측에서 운용하고 있는 차량번호 앞에 'S'표기와 철도마크(표지)로서 구분한다.

제32조(인도인수 절차와 방법) ① 쌍방의 열차운행에 사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그 조립품이 완비되어 정상상태이어야 하며, 쌍방간 차량인도인수 기술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쌍방은 [별표 1]의 철도차량 인도인수서를 4부 작성하여 서명한 다음 2부씩 서로 교환한다.
 - 1. 인도인수서에는 차량상태, 불량차 내역, 당일 누계 차량 인도인수량, 연간누계 인도인수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쌍방은 인도인수 차량수에 대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호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쌍방은 차량 인도인수서 불량차를 인도할 수 없으며, 인수소속은 불량차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인수거부 불량차는 인도측에서 수리 후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차량이 소속된 측에서 보수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소속의 과실 또는 부품을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⑤ 인수차량의 불량개소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차량을 유지하고 “불량차량 유지조서”[별표 2]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고, 쌍방 열차운행사무소장이 고장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협의한다. 이 경우 차량은 인수가 안된 것으로 보며, 인도소속의 책임으로 협의되면 수리 또는 위탁수리를 의뢰한다.

- ⑥ 인수거부 불량차 중 인도소속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은 차량이 소속된 인수소속에 위탁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리의뢰서" [별표 3] 4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2부씩 갖는다. 위탁수리 시간은 48시간 이내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9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물건을 실은 차량이 운행에는 지장이 없고 경미한 불량인 경우 "불량차량등록부" [별표 4]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차량과 함께 인도하고, 인수할 때 기재된 불량 개소는 수리 없이 인수한다.
- ⑧ 쌍방은 차량인도시 적재상태가 불량하여 인수 거부된 차량에 대하여는 적재상태를 재정비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 ⑨ 차량의 인도는 상대측 분계역에서 하고, 인수는 자기측 분계역에서 한다.
- ⑩ 쌍방은 차량의 인도인수를 위하여 각각 4명의 인도인수 요원(검수요원)을 상대측 분계역에 파견한다.
- ⑪ 인도인수는 쌍방의 차량검수 책임자간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임받은 자가 서명할 수 있다.
- ⑫ 쌍방은 상대측에 상주하는 자기측 인도인수요원의 명단을 매월단위로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승인하여야 한다.
- ⑬ 인도인수를 위해 상대측 분계역으로 이동하는 인도요원은 당일 최초 운행열차 및 최종 운행열차에 승차하여 상대측 분계역으로 이동 및 자기측 분계역으로 철수하여야 한다.

제33조(차량검수 및 기술지원) ① 자기측 구간에서 운행중인 상대측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보수품을 요구할 경우에 상대측은 보수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리완료 후 보수내역 및 차량상태를 상대측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생한 폐부품은 당해 차량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자기측 구간에서 운행중인 상대측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측은 필요인원 파견 및 장비를 제공하여 차량을 수리할 수 있고, 자기측은 수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쌍방간 차량운용 전에 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요원의 실무교육은 쌍방이 지정하는 정비소속에서 시행하고, 인원 및 시간은 별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4조(검수시설 설치) ① 쌍방은 자기측 분계역에 차량 인도인수요원의 사무공간 및 차량정비용 장비의 설치 등 필요 시설물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설치시설물은 자기측 부담으로 하고, 인도인수 및 수리에 필요한 장비가동에 사용되는 전기는 상대측이 공급한다.

- ② 차량 정비용 장비는 [별표 5]와 같으며, 추가장비 설치시는 쌍방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사고처리·손해배상책임·편의보장 및 활동

제1절 사고처리

제35조(사고의 구분 및 중별) ① "사고"는 열차운행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철도안전사고, 열차운행선에서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일반안전사고로 구분한다. 단, 사고보상 및 책임부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철도사고의 중별은 다음과 같다.

1. 열차사고

- 가. 열차충돌 : 열차가 다른열차 또는 차량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 나. 열차탈선 : 열차가 탈선한 사고
- 다. 열차화재 :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열차운행이 중단된 사고
- 라. 열차전복 : 차량이 수직면에서 지면으로 45도이상 넘어지거나 자체와 대차가 서로 분리되어 그 중 어느 하나가 자갈표면 밖으로 나간 사고
- 마. 열차분리 : 열차가 운행중에 열차가 서로 분리되는 사고
- 바. 열차지연 :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열차가 운전시분보다 11분이상 늦은사고

- 2. 건널목사고 :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등과 충돌 또는 접촉한 사고

3. 사상사고 :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제36조(사고보고 및 조사) ① 정거장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1차적으로 분계역장이 대응하고, 정거장의
에서 발생시에는 기관사 또는 사고현장 발견자가 분계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사항을 상대측 분계
역장에게 통보한다.

1. 안전사고 경위 및 처리상황
2. 사망자에 대한 인적사항, 사망일자, 사망원인
3. 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부상정도, 입원내용
4. 차량의 파손 등 피해정도
5. 물적피해 상황 등

② 분계역장은 신속히 사고내용을 조사토록 하고 필요시 상대측과의 협의사항 등을 정하여 관계자
로 하여금 정밀 조사토록 할 수 있다.

③ 분계역장은 사고대책 수습을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할 부분에 대
하여는 현장보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사상자 조치) ① 역구내 외에서 사상자 발생(상대측 직원)시에는 신속한 응급조치와 의료기관
으로 후송하고 사망자 발생시는 사고현장 상태가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열차운행에 지
장이 없도록 궤도 밖으로 안치하여야 한다.

② 열차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은 사상자수, 부상정도, 사상자의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
여 사고지역에 가까운 분계역장에게 보고하고, 쌍방은 도움 요청을 받은 즉시 사상자 구원에 최
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고처리 후 책임판정을 위하여 “사상사고처리보고서”[별표6]를 작성하여 분계역장이 보관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상자가 원할 경우 자기측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⑤ 사망자에 대한 시체의 인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1. 시체를 검시한 후 시체는 소지품과 함께 유족 또는 연구자에게 신속히 인도한다.
2.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
측과의 동의하에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할 수 있다.

제38조(사고차량 처리) ① 상대측 차량이 자기측 구간에서 열차의 탈선, 전복, 추돌 등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대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으로 사고원인, 차량상태, 수리 가능 여부를 상대측 철도직원
에게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파손 차량을 차량이 소속된 철도에 수선을 의뢰할 때는 “위탁수리의뢰서”[별표 4]를 4부 작성
하여 2부씩 보관하고, 수리비용은 쌍방이 협의한다.

③ 자기측 구간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대측 차량을 폐차하여야 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한 후 차량
이 소속된 철도에서 인정하면, 제작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제한 잔존금액의 10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차량이 소속된 측에서 사고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면 차량이 소속된 측의 분계역까지 운송하고
쌍방의 인도인수 철도직원이 공동 확인하며, 사용가능 부품이 있을 경우 재사용하는 조건으로
제작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제한 잔존금액은 남북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차량이 소속한
측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39조(사고복구) ① 분계역장은 사고복구 대책반을 구성하여 책임자를 정하여 현장상황보고 등을
최초보고, 중간보고, 진행보고, 최종보고 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필
요시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한다.

② 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물품은 사고복구를 위하여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태세
와 점검 등으로 비상시 대비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상대측의 요구 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고복구 비상자재(품목 및 수량)를 쌍방이 합의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쌍방은 복구방법 및 복구예정시간 등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손해배상책임

제40조(배상금 지급의 보증) ① 쌍방의 정부당국은 철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지급보증을 한다.

② 쌍방이 인정한 보험회사 또는 제3국의 보험회사의 현장조사 요구시 충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배상의 면제) 쌍방의 철도당국은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전적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2조(배상금 지급방법) ① 사고로 인한 배상금은 미달러 또는 유로화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② 배상금은 상대측 분계역장 입회하에 수령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제43조(인적피해 손해배상 산정) 인적피해 손해배상 산정은 쌍방이 인정한 보험회사의 배상기준에 따른다.

제44조(물적피해 배상범위)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상한다.

1. 물건이 멸실 또는 수리불능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교환 가액
2. 훼손된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리비

제45조(화물의 배상) ① 쌍방은 철도측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화물의 멸실, 훼손, 부패 혹은 기타 원인에 의한 질량저하로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게 배상하는 경우 배상액 한도는 남북이 합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송장에 화물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송장 기재가격을 근거로 하여 배상한다.

제46조(화물운송기한 불이행에 따른 배상액) 화물이 운송기한을 초과하여 도착한 경우 운송기한을 초과한 철도측은 운송비용과 초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수화인에게 다음과 같은 지연료를 지불한다.

1.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1/10 미만인 경우 : 운송비의 6%
2.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1/10 이상이거나 2/10 미만인 경우 : 운송비의 12%
3.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2/10 이상이거나 3/10 미만인 경우 : 운송비의 18%
4.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3/10 이상이거나 4/10 미만인 경우 : 운송비의 24%
5.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4/10 이상인 경우 : 운송비의 30%

제47조(화물피해 배상청구) ① 송화인과 수화인은 운송계약을 근거하여 배상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배상청구 시 송화인은 출발역에, 수화인은 도착역에 배상청구신청서와 배상청구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제출받은 철도측은 배상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배상청구를 심의하여, 배상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였다면 배상청구인에게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④ 배상청구인이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절 편의보장

제48조(편의보장의 대상) 쌍방이 편의를 보장하여야 할 대상은 상대측 대상자(이하 '통행자' 라함)와 화물수송에 참여하는 외국인이다.

1. 철도직원
2. 통행차량의 기관사 및 승무원
3. 화물수송에 참여하는 외국인

제49조(편의보장) ① 쌍방은 통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편의보장을 하여야 한다.

1. 쌍방은 통행자의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쌍방은 통행자가 운행구간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법칙금을 부과하거나 상대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쌍방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쌍방은 통행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 ② 법질서를 위반하고 자기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상대측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

-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하며, 범질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 ③ 쌍방은 통행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 ④ 외국인이 범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상대측과 해당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장 기타사항

- 제50조(환경보존 대책)** ① 열차가 운행하게 될 남북관리구역은 50여년 동안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이고, 세계적으로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쌍방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철도운행으로 인한 생태계변화 등을 쌍방의 관계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2년 단위로 남북이 합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 ③ 본 지역에 선로 및 구조물의 신설 또는 개량과 노선변경 등을 시행할 때는 환경영향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행하여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 ④ 보존가치가 있는 희귀생물, 멸종 동식물, 곤충, 자연습지, 해안사구 등에 대한 자료는 상호 연구결과 등을 교환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공동대책을 세운다.

제51조(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운영)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부록1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운영세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부속서의 개정) 본 부속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내용을 개정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53조(부속서의 발효) 본 부속서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서명·교환한 후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 판문역에서의 화물취급은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에 의한다.
2. 제46조에 정한 화물운송기한 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은 판문역의 화물취급시설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남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 형 석	북측 단장 박 정 성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

2007. 5. 13

남과 북은 2007년 4월 27일과 28일, 5월 13일 개성에서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하여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명칭 및 날짜

명칭은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으로 하며 날짜는 2007년 5월 17일로 한다.

2. 참가인원 및 참가급수

참가인원은 남측에서 100명, 북측에서 50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참가급은 장관급(상급)으로 한다.

3. 열차시험운행시간

10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4. 열차시험운행구간

경의선에서는 남측 문산역에서 북측 개성역까지, 동해선에서는 북측 금강산역에서 남측 제진역까지로 한다.

5. 열차시험운행 방식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남북 쌍방은 각기 자기측 기관차에 객차 5량(남측발전차 포함)씩 연결하는 것으로 한다.

경의선은 북측 인원이 남측 문산역에 육로로 들어와 남측 인원과 함께 열차를 타고 북측 개성역까지 나가는 것으로 하고, 동해선에서는 남측 인원이 북측 금강산역에 육로로 나가 북측 인원과 함께 열차를 타고 남측 제진역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한다.

6. 열차시험운행 행사

열차출발역들에서 경과보고와 남북단장들의 기념사(축하발언)를 한 다음 열차시험운행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7. 통행 및 세관검사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된 잠정합의서에 준하여 진행한다.

8. 통신방법

남북 철도통신에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남과 북은 5월 14일에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에 연결한다.

9. 열차운행 통보

남북 쌍방 분계역장들이 열차출발 5분전 상호 통보(폐쇄)하고 열차를 출발시키며, 열차출발을 상호 통지한다.

쌍방 분계역장들은 열차도착시 상대측에 통보한다.

10. 신호방식

신호는 수신호로 한다.

출발 : 녹색기로 원형을 그려 신호한다.

정지 : 적색기로 수평으로 신호한다.

11. 열차운행 안내

남과 북은 상대측 기관사가 동승하여 자기측 구간에 대하여 안내한다.

12. 철도시설 점검

남과 북은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각기 자기측 해당지역의 철도시설을 책임지고 점검 보장한다.

13. 문건교환

열차시험운행 참가인원에 대한 사진명단과 필요한 발언문들은 5월 16일 오전에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를 통하여 교환한다.

14. 열차시험운행 일정

■ 경의선

- 10:00 북측 참가자 버스편으로 남측 출입사무소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 10:10 북측 참가자 남측 출입사무소 출발
- 10:30 북측 참가자 문산역 도착, 열차시험운행 행사
- 11:30 남측 열차 문산역 출발
- 12:00 도라산역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 12:10 도라산역 출발
- 12:20 판문역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 12:40 판문역 출발
- 13:00 개성역 도착
- 13:00 - 14:30 동석식사
- 14:40 개성역 출발
- 15:00 판문역 도착, 통행 및 세관검사
- 15:30 군사분계선 통과

■ 동해선

- 09:30 남측 참가자 버스편으로 북측 통행검사소 도착, 통행 및 세관검사
- 10:00 북측 통행검사소 출발
- 10:30 금강산역 도착, 열차시험운행 행사
- 11:30 북측 열차 금강산역 출발
- 11:50 감호역 도착, 통행 및 세관검사
- 12:10 감호역 출발
- 12:30 제진역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 13:00 - 14:30 동석식사
- 14:30 - 15:00 제진역 통행 및 세관 검사
- 15:00 제진역 출발
- 15:30 군사분계선 통과

15. 본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007년 5월 13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남측수석대표

김경중

북남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북측단장

박정성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2007. 12. 6

쌍방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다음과 같이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1. 쌍방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위하여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열차가 통과하는 시간에 개방한다.
2. 쌍방은 철도화물 수송을 위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 명단과 열차 현황, 적재화물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시간 등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기관차 앞면 오른쪽 상단에 50×40 cm 크기의 주황색 깃발을 부착한다.
4.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최저 시속 20km/h로, 최고 시속 6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의 출입 및 세관심사 등을 받는다. 쌍방은 세관심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지원 문제를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열차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하며 상대측의 통제품 및 금지품 등의 반출입금지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해 인원, 장비가 군사분계선 100m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 열차운행시 사고를 비롯하여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측에 신속히 통보하며, 상대측 구호(작업) 차량 및 인원의 긴급통행을 허용하는 등 정상회복에 협력하도록 한다.
8. 본 합의서는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 교환한 후 2007년 12월 11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 할 수 있으며 동·서해지구 기본도로, 철도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 발표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2007년 12월 6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부장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김장수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을 다음과 같이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1. 통행의 군사적 보장

-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동해지구에서는 10m 구간, 서해지구에서는 2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각각 개방하고 도로통행시간을 늘이는 원칙에서 연간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 주요 명절과 기념일, 일요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그때마다 편리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도로를 통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명단과 차량, 적재한 기차재들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날짜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통행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날짜의 도로 통행이 마감되기 3시간 전에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 통행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동·서해지구 인원 및 차량통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질서와 표시규정 등을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서해지구에서는 통행편의와 통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통행시간 간격을 두고 도로통과를 보장하며, 동해지구에서는 검사장과 주차장이 건설될 때까지 현통행질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인원과 차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통행편의 보장방안을 해당실무접촉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⑤ 쌍방은 도로통행을 지체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대측의 통제품 및 금지품 등의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 ⑥ 쌍방은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한 긴급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⑦ 쌍방은 철도화물 통행을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규정된 대로하기로 하였다.
- ⑧ 쌍방은 도로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야간통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장비 등을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통신의 군사적 보장

-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안의 통신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2008년부터 인터넷 통신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센터 건설과 운영 방식, 통신중계국 구성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자연재해로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상호 통보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남북통신망의 2중화를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작업현장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군통신 선로와 군통신연락소를 남북 교류와 협력의 군사적 보장에 그대로 이용하며 통행시간이 늘어나는데 맞게 통신 근무시간을 늘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연락소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3. 통관의 군사적 보장

-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원칙에서 통관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질서를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관질서를 위반하는 인원,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선별검사 방식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세관검사를 신설했거나 확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설비와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일꾼들의 실무접촉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수정보충 및 발효

- ①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합의서는 동·서해지구 철도·도로통행, 통신·통관의 새로운 군사적 보장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 ③ 본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 ④ 본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2월 13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부 장 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김 장 수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자,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남측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로 출입하는 남측 인원, 수송수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들의 수송수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출입사업기관)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와 관련한 사업은 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리기관에는 출입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부서를 둔다.

제4조(수속의 당사자) 출입, 체류, 거주, 수속은 당사자가 한다.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공업지구 관리기관이나 초청단위, 대리인도 출입, 체류, 거주수속을 할 수 있다. 17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의 출입, 체류, 거주수속은 부모나 후견인이 한다. 제5조(출입통로와 그 지정) 인원 수송수단은 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이 정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출입통로를 정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통로의 변경질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출입통로를 변경하려할 경우 공업지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 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된 증명서를 가진 자
5.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가진 자
6. 출입, 체류, 거주를 금지시키기로 합의한 자

제8조(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과 자동차통행증의 발급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해당 증명서발급준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9조(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정형통보)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인원, 수송수단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증명서의 발급정형을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인원의 출입) 인원은 여권(합의한 대상에 한함) 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자동차, 열차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공업지구에 출입하여야 한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은 동반자로 기재한 증명서를 소유한 부모 또는 후견인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장기체류자, 거주자는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가지고도 출입할 수 있다.

제11조(수송수단의 출입)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는 이 규정 제8조에 따라 발급 받은 자동차통행증을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열차는 당국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검역) 인원, 수송수단은 공업지구출입통로에서 출입검사, 세관검사와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안전과 출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검역을 과학 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체류분류 및 체류기간) 인원은 공업지구에 단기 또는 장기로 체류할 수 있다. 단기체류는 공업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 이상으로 한다. 체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체류기일연장) 공업지구에 들어 온 자는 체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류기일이 끝나기 3일 전에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일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체류등록) 공업지구에 도착한 자는 48시간 안으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거주지, 체류목적, 기간 같은 것을 밝힌 체류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6조(체류등록제외대상)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업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안으로 돌아가는 자
2. 남측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 대표기관의 성원
3. 관광객
4.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제17조(거주등록) 공업지구에 1년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 장기체류, 거주하려는 자는 체류등록을 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체류 또는 거주하려는 곳과 기간, 이유 같은 것을 밝히고 최근 6개월안에 찍은 천연색 상반신사진(3×4cm) 4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은 17살이상의 성인에게 발급한다. 미성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에 동반자로 기재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해당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체류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연장) 체류등록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전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해당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22조(거주지변경과 그 등록) 공업지구에 거주한 자는 필요에 따라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를 옮긴날부터 14일 안으로 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에 거주지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출생, 사망, 결혼등록) 공업지구에서 출생, 사망, 결혼 같은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에 등록신청서와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문건을 내고 해당한 등록을 한다. 당사자는 해당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증명서의 재발급) 거주등록증, 체류등록증,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 자동차통행증 같은 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자는 제때에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제25조(공업지구밖의 출입) 공업지구에서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으로 가려는 자는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증의 발급신청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 유효기간연장, 거주지변경등록 수수료 같은 것을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증명서의 소지) 공업지구에서 체류, 거주하는 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28조(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보장)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자는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체류자, 거주자를 구속, 체포할 수 없으며 몸이나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29조(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반환) 장기체류, 거주하던 자는 사업을 끝마치고 돌아가려 할 경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30조(규정하지 않은 사항의 협의처리) 출입, 체류, 거주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거주 규정

주제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5호로 채택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원 및 수송수단의 신속한 출입과 체류자,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남측지역에서 금강산관광지구(이 아래부터 관광지구라 한다)로 출입하는 남측인원, 수송수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수송수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출입사업기관) 관광지구에서 출입, 체류, 거주와 관련한 사업은 관광지구출입사업기관이 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에는 출입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부서를 둔다.

제4조(수속의 당사자) 출입, 체류, 거주수속은 당사자가 한다.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관광지구관리기관이나 초청단위, 대리인도 출입, 체류, 거주수속을 할 수 있다. 17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의 출입, 체류, 거주수속은 부모나 후견인이 할 수 있다.

제5조(출입통로와 그 지정) 인원, 수송수단은 관광지구출입사업 기관이 정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관광지구출입사업 기관은 도로, 철도, 배길, 항공로별로 출입통로를 정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통로의 변경) 관광지구출입사업기관은 출입통로를 변경하려 할 경우 관광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 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 관광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증명서를 가진 자
5.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가진 자
6. 출입, 체류, 거주를 금지시킴으로 합의한 자

제8조(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과 자동차 통행증의 발급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해당 증명서의 발급준칙을 관광지구출입사업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정형통보) 관광지구관리기관은 인원, 수송수단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 자동차통행증의 발급정형을 관광지구출입사업 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인원의 출입) 인원은 러권(합의한 대상에 한함), 신원증이나 관광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자동차, 배, 열차,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리용하여 관광지구에 출입하여야 한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해당 증명서에 동반자로 기재하고 부모 또는 후견인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장기 체류자, 거주자는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가지고 출입할 수 있다.

제11조(자동차, 열차의 출입) 자동차는 관광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자동차통행증을 가지고 출입한다. 열차는 당국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한다.

제12조(배의 출입) 입항하려는 배는 7일전에 배자료와 입항 시간을 관광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관광지구출입사업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수로안내를 받아 입항한다. 이 경우 입항통보를 받은 관광지구출입사업 기관은 3 일안으로 입항승인을 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배는 24시간전에 관광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관광지구 출입사업 기관에 입항통보를 하고 입항한다. 출항하려는 배는 24시간전에 관광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관광지구 출입사업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출항한다.

제13조(출입검사, 세관검사, 검역) 인원, 수송수단은 관광지구출입 통로에서 출입검사, 세관검사와 위생검역,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관광지구의 안전과 출입자들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록 검사,검역을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14조(체류) 인원은 관광지구에 단기 또는 장기로 체류할 수 있다. 단기체류는 관광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으로 한다. 체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제15조(체류기일연장) 관광지구에 들어 온 자는 체류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류기일이 끝나기 3일전에 관광지구출입 사업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체류등록) 관광지구에 도착한 자는 48시간안으로 관광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이름, 성별,생년월일,국적,직업,거주지,체류목적,기간 같은 것을 밝힌 체류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7조(체류등록의 제외대상)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2. 관광지구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7일안으로 돌아가는 자
3.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배의 선원
4. 남측에 주재하는 국제기구,다른 나라 대표기관의 성원
5.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제18조(거주등록) 관광지구에 1년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관광 지구출입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체류등록증,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 장기체류,거주하려는 자는 체류등록을 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관광지구 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증,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체류등록증,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서에는 이름,성별,생년월일,국적,직업,체류 또는 거주하려는 곳과 기간,리유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고 최근 6개월안에 찍은 천연색상반신사진 (3X4Cm) 4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체류등록증,거주등록증의 발급) 체류등록증,거주등록증은 17살이상의 성인에게 발급한다. 미성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류등록증,거주등록증에 동반자로 기재한다. 관광지구출입사업기관은 체류등록증,거주등록증을 해당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체류등록증,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체류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체류등록증,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수 있다.

제22조(체류등록증,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연장) 체류등록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전에 관광지구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유효 기간연장신청서를 관광지구출입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관광지구출입사업기관은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해당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23조(거주지변경과 등록) 관광지구에 거주한 자는 필요에 따라 거주지를 옮길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관광지구출입사업기관에 거주지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출생,사망,결혼등록) 관광지구에서 출생,사망,결혼 같은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관광지구출입사업기관에 등록 신청서와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문건을 내고 해당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해당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안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증명서의 재발급) 거주등록증,체류등록증,출입증,사업자증, 관광증,자동차통행증 같은 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자는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26조(관광지구밖의 출입) 관광지구에서 관광지구밖의 공화국영역으로 가려는 자는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증의 발급신청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관광 지구출입사업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 체류등록증,거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유효기간 연장,거주지변경등록수수 같은것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관광지구출입사업기관이 관광지구 관리기관과 협의 하여 정한다.

제28조(증명서의 소지) 관광지구에 체류,거주하는 자는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29조(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보장) 관광지구에 체류,거주하는 자는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서신의 비밀,관광로징에서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체류자,

거주자를 구속,체포할수 없으며 몸이나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30조(체류등록증,거주등록증의 반환) 장기체류,거주하던 자는 사업을 끝마치고 돌아가려 할 경우 체류등록증,거주등록증을 관광지구출입사업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31조(규정하지 않은 사항의 협의처리) 출입,체류,거주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광지구출입 사업기관과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

[시행 2009.6.8] [국무총리훈령 제537호, 2009.6.8, 제정]

4.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출입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남북출입사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출입심사 사무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제3조(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① 남북출입사무소에 주재하는 기관(남북출입사무소를 포함하며, 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간에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출입사무소에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출입장소별로 각각 둔다.

제4조(구성) ① 각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남북출입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2개 이상의 관계기관이 관련된 남북출입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남북출입사무와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출입사무의 처리 및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남북출입사무와 관련된 긴급한 상황의 발생 등의 이유로 위원장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남북출입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이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정보공유)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남북한을 왕래한 사람이 적발된 경우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남북한 간 반출·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반출·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3. 남북한을 왕래한 사람 중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된 경우
4. 남북한을 이동한 차량 또는 화물 중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차량 또는 화물이 발견된 경우
5. 남북한 간 반출·반입된 동·식물에 대한 검역결과 관계 법령에 따른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6. 남북한 간 철도·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남북출입사무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공동대응 등) ① 위원장은 남북출입사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신속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남북출입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보안계획) ①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북출입사무소 경비·보안계획(이하 "경비·보안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비인력의 배치·운용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 및 보안검색에 관한 사항
3. 남북출입사무소 외곽의 울타리·초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첨단 보안장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출입사무소의 경비·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무소장은 남북출입사무와 관련된 경비대상의 증가, 보안 관련 시설 또는 장비의 도입 등으로 경비·보안환경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비·보안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비·보안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군·경찰 등과 협조·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구역의 지정·관리) ① 사무소장은 남북출입사무와 관련된 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남북출입사무소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보안업무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남북한을 왕래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소
2. 남북한을 이동하는 사람, 차량, 동식물 등을 검역하는 장소
3. 남북한을 이동하는 차량의 종류·차량번호 등을 확인하는 장소
4. 지정장지장(指定藏置場)(「관세법」에 따라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5. 세관검사장(「관세법」에 따라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제12조(보안점검) ① 사무소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남북출입사무소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 안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시설 또는 장비를 관리하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진촬영 등의 제한) 사무소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남북출입사무소 안의 일정한 구역 또는 시설을 지정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의 촬영을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상호협력 등) 사무소장 및 관계기관은 남북출입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사람·차량 등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00537호, 2009.6.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2.9.14] [통일부훈령 제469호, 2012.9.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출입사무소(이하 "사무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청사 및 각종 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사무소의 청사(도로 및 철도), 게이트 시설, 물류센터, 각 종 출입심사시설, 기타 이에 부속한 시설물과 부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휘·감독) 청사 및 시설관리 업무의 현장담당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는 출입총괄과장으로 하며,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은 남북출입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 가진다.

제4조(주요보고) ① 각 현장담당자(용역업체 직원포함)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발생이 예견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출입총괄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출입총괄과장을 통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 현장담당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시설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출입총괄과장에게 보고하며, 출입총괄과장은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세부 지침)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사무소의 시설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소장이 정한다.

제2장 시설 관리

제6조(건축·기계·전기) ① 청사 및 시설의 일상적인 관리는 전문업체 용역에 의하며 주요업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시설관리 도급계약서에 따른다.

② 각 분야별 시설관리 담당자는 용역업체의 계약사항 준수여부, 업무수행상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청사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록사항은 별도 양식에 의거 각 분야별로 작성 제출토록 한다.

④ 냉·난방 및 냉·온수시설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총괄과장의 승인을 얻어 조치한다.

제7조(통신) 통신 담당자는 통신기기, 감시장비, 시청각 기자재 등 통신 및 음향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장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 조치한다.

제8조(운영) 모든 청사 및 시설의 운영은 관리담당자 또는 용역업체의 관련 기술 분야 종사자만이 관리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신속히 응급조치하고 출입총괄과장에게 보고하고 출입총괄과장은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보호구역 표시) 수전실, 변전실, 기타 고압 전기공작물이 설치된 장소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사람의 주의를 상기시킬 수 있도록 제한구역 표시를 해야 한다.

제3장 청소 및 조경관리

제10조(청소업무) ① 시설내의 청소·미화관리는 전문업체의 용역계약에 의하며 주요업무는 청소역무도급계약에 의한다.

② 청소관리 담당직원은 용역업체 업무수행 상태 등을 지도·감독한다.

③ 청소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사(도로 및 철도)내외 시설, 각종 검역시설, 정문 등의 실내외와 현관, 복도 로비 및 화장실 등
2. 정원, 경내도로 및 외곽 등
3. 유리, 카페트 등
4. 비품, 집기운반 및 정리정돈 등

제11조(조경업무) 조경관리 담당자는 정원수, 분화초, 잔디 및 정원 등을 관리한다.

제12조(조경수 관리) 조경수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수, 시비, 전지, 소독, 식수, 이식 등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2. 식수 및 육림 등 정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초에 식수이식, 시비, 육림, 폐가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장 후생시설 관리

제13조(구내식당) ① 구내식당 운영 및 급식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담당 직원을 두며, 담당직원은 식단 및 위생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② 식당관리 담당직원은 환자 등 특별보호대상자 발생시 출입통과과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③ 구내식당은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관리 담당직원은 시설·기구 등의 사용 및 제반 수칙을 준수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5장 입주기관 및 입주업자 관리

제15조(사무실 임차 및 시설물 사용허가) ① 사무소의 청사 및 출입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사무소장의 사무실 등 청사의 배정기준은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별표1)에 의하여 배정한다. 다만, 사무소장은 남북출입업무의 원활한 지원, 남북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사무소의 청사 또는 출입시설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사임대차 계약준칙(별표2)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대차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준칙항목의 일부를 고치거나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④ 입주기관 또는 입주업체는 임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허가없이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다.
- ⑤ 임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⑥ 사무소내에 임의로 물품을 반출입할 수 없으며,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사무실 재조정) 사무소내 사무실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관 기관에 기 배정된 장소 중 장기간 활용실적이 미미하거나 당초 목적에 따라 활용하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징수 등) 사무소의 청사 및 출입시설을 임차·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의거 점유면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시설물의 변경 등) ① 입주기관 또는 입주업체에서 시설물의 변경, 추가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시설물 변경 또는 추가설치시에는 변경목적, 사유, 관련 도면, 공사일정, 시공회사, 시공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을 명기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설물 변경 또는 추가설치 완료 후 사무소장에게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완료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원상복구 등) ① 사무소의 청사 및 출입시설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임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② 입주기관 또는 입주업체의 귀책사유로 사무소 시설물을 손괴, 파손, 변형하였을 경우에는 자비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 및 재난예방

제20조(보안 및 화재예방 등) ① 사무소의 청사 및 출입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주

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는 사무소가 군사보호시설구역 내에 위치하는 관계로 사무소의 청사 출입 시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책임을 진다.
- ③ 입주기관 또는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무소장은 화재예방 안전점검 또는 보안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양해를 받거나 사전 계획을 통보한 후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사무소장은 입주기관 또는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점검 또는 보안점검 시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⑤ 난방보조기구(히터, 전기장판, 전기난로, 다리미 등)는 사용할 수 없다.
- ⑥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구역을 정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선 통제 등) ① 출입심사선은 방북승인을 받은 자 이외에는 무단으로通行할 수 없다. 단 공무원 출입 시 시설관리자 또는 출입심사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출입할 수 있다.

②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출입심사기관, 상주인원 등 포함)은 사무소에서 발행한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해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상주직원 및 출입시설 이용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장 회의실 및 고객대기실 사용

제22조(회의실 및 고객대기실 사용) ① 회의실 및 고객대기실은 사용 1일전까지 예약(유선)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객대기실은 전·현직 장차관 이상, 회담대표 등 반드시 영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회의실 및 고객대기실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실 및 고객대기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제23조(재검토키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69호, 2012.9.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동행의
관문
남북통일의
전초기지

남북출입사무소 10주년 자료집

발행일 2013. 12. 26
발행처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희망로 277
전 화 Tel 031)950-5020 | Fax 031)954-8117
제 작 상상가가 Tel 02)322-0758